

청양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185호 2018. 12. 15.



회 람							
--------	--	--	--	--	--	--	--

발행 청 양 군 (편집 기획감사실 ☎041-940-2020)

조 례

○제2320호 청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4
○제2321호 청양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7
○제2322호 청양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31
○제2323호 청양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32
○제2324호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33
○제2325호 청양군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6
○제2326호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8
○제2327호 청양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41
○제2328호 청양군 관광진흥 조례	43
○제2329호 청양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0
○제2330호 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52
○제2331호 청양군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56
○제2332호 청양군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58
○제2333호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59
○제2334호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개정조례	63
○제2335호 청양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66
○제2336호 청양군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68
○제2337호 청양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0
○제2338호 청양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73
○제2339호 청양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	75
○제2340호 청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76
○제2341호 청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	79
○제2342호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1
○제2343호 청양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89
○제2344호 청양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92
○제2345호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94
○제2346호 청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97
○제2347호 청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8
○제2348호 청양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02
○제2349호 청양군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부품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06
○제2350호 청양군 농작물 병해충예찰 ·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110
○제2351호 청양군 다목적육묘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13
○제2352호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17
○제2353호 청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21
○제2354호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22
○제2355호 청양군 관정시설물 개발 및 운영 관리 조례	135
○제2356호 청양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140

규 칙

- 제1222호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45
- 제1223호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0
- 제1224호 청양군포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2
- 제1225호 청양군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204
- 제1226호 청양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 206
- 제1227호 청양군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개정규칙 210
- 제1228호 청양군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213
- 제1229호 청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215

규 정

- 제301호 청양군각종위원회여성위원회에관한규정 폐지규정 217
- 제302호 청양군방화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218
- 제303호 청양군공사의수의계약사유평점제실시규정 폐지규정 227
- 제304호 청양군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228
- 제305호 청양군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규정 232

고 시

- 제2018-97호 신대2지구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 고시 234
- 제2018-98호 남양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일반지구) 시행계획 고시 235

청양군의회에서 의결 · 이송된 청양군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8년 12월 15일

청양군 조례 제2320호

청양군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양군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청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정(이하 “조정”이라 한다) 하기”를 “조정하기”로, “군정조정위원
(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둔다”를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로 한다.

제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청양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 제2항 중 “군수가 되고”를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로,
“사고가 있”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로 하고, 같은 조 제

3항 중 “실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을 “실장·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으로, “관계유관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촉 위원은 필요 시 분야별 관련 회의 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끝남으로써 해촉된다.

제2조제5항 중 “자는 이”를 “사람은 회의”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조정한다.

제3조제6호, 각 호 외의 부분제14호, 각 호 외의 부분제16호, 각 호 외의 부분제18호, 각 호 외의 부분제19호, 각 호 외의 부분제24호 및 각 호 외의 부분제2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제26호를 제27호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 외의 부분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다른 조례에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제4조제4항 중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매기고 그 인쇄물”로 한다.

제5조 중 “청취할”을 “들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서기 약간인을”을 “서기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 평가담당주사가”를 “기획감사실 주무팀장이”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양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청양군군정조정위원회”를 “청양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청양군군정조정위원회”를 “청양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군정조정위원회”를 “청양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

② 「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청양군군정조정위원회”를 “청양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

③ 「청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청양군군정조정위원회”를 “청양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청양군군정조정위원회”를 “청양군 군정조정위원회”

로 한다.

④ 「청양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군정조정위원회”를 “청양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군정조정위원회”를 “청양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8년 12월 15일

청양군 조례 제2321호

청양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 별표 1
2. 군기·읍기·면기: 별표 2
3. 문장 및 휘장: 별표 3

4. 캐 릭 터: 별표 4
5. 군 꽃: 철쭉
6. 군 나무: 느티나무
7. 군 새: 원앙
8. 군 노래: 별표 5
9. 군민현장: 별표 6

제4조(군기 · 읍기 · 면기) ① 군기 · 읍기 · 면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제2의 제1호부터 제2의 제11호까지”와 같다.

② 군기는 군과 군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

③ 군기 · 읍기 · 면기는 군이나 읍 · 면의 행사장에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으며, 관리 및 게양은 「대한민국국기법」 제9조와 제10조를 따른다.

제5조(문장 및 휘장) ① 문장 및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의1호부터 별표 3의2호까지”와 같다.

② 문장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나 물자, 공문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③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군 · 읍 · 면을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 교포로서 군 · 읍 · 면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는 휘장을 수여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 수여대장을 갖춰

두고 수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군수는 군의 상징물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문조사, 공모,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실시한 후 청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 군수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의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상징물의 활용제한) ① 누구든지 개인의 영예나 이익을 위해 제3조제1호, 제4호의 상징물을 활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상징물을 활용할 수 있다.

1. 군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경우
2. 미리 군수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

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 예정 또는 사용승인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가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위반 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지적재산권 보호) 군수는 제3조제4호에 규정한 상징물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청양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작 및 사용 중인 상징물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심벌마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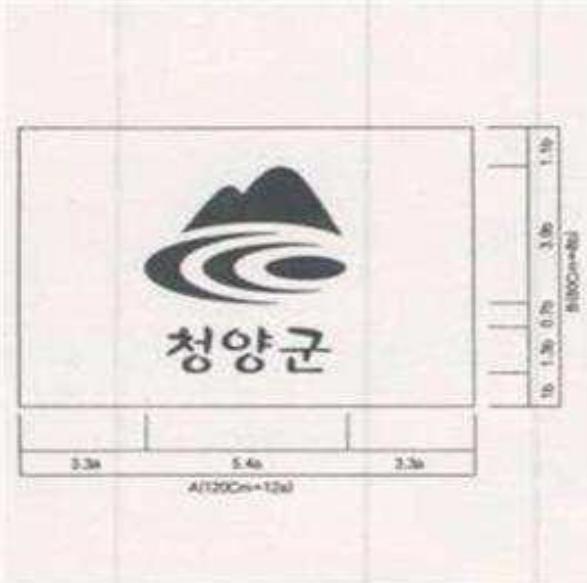


- 청정 청양의 영문 첫글자 'C'를 조형의 기본으로 수려한 자연환경을 표현하였다. 칠갑산의 울창한 숲과 맑은공기(녹색), 깨끗한 물과 훈훈한 인심(청색), 특산물과 청양의 미래(적색)을 표현 하였으며 3개의 동심원은 청양의 역사와 미래, 생명을 나타낸다.

※ 심벌마크 최소 사용규정의 기본단위는 m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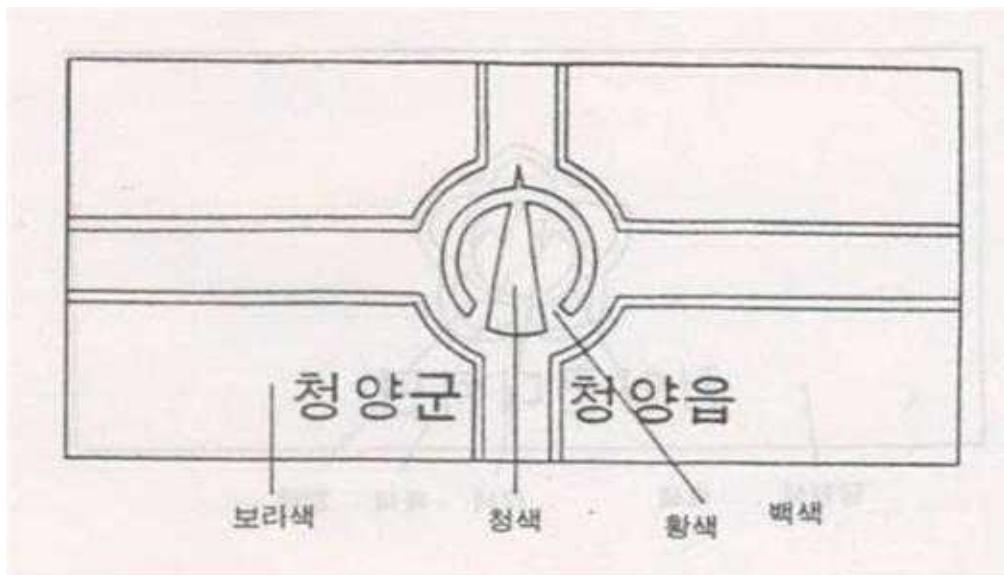
[별표 2의1]

군 기

기 본 형	작 도 형
	
군 기 의 의 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군기의 깃면의 백색바탕은 백의민족의 후예로서 순박한 군민의 성향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의지를 상징하였다.심벌마크는 21세기 생명의 땅, 청정청양의 영문 첫글자 C를 조형의 기본으로 수려한 자연환경을 표현하였다. 칠갑산의 울창한 숲과 맑은 공기(녹색), 깨끗한 물과 훈훈한 인심(청색), 특산물과 청양의 미래(적색)를 표현하였으며, 3개의 동심원은 청양의 역사와 미래, 생명을 나타낸다.	
제 작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군기의 깃면의 규격 및 마크·로고등의 규격은 작도형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활용할 수 있다.바탕은 백색으로 하며, 위쪽은 녹색으로, 왼쪽은 청색으로, 오른쪽은 빨간색으로, 로고는 검정색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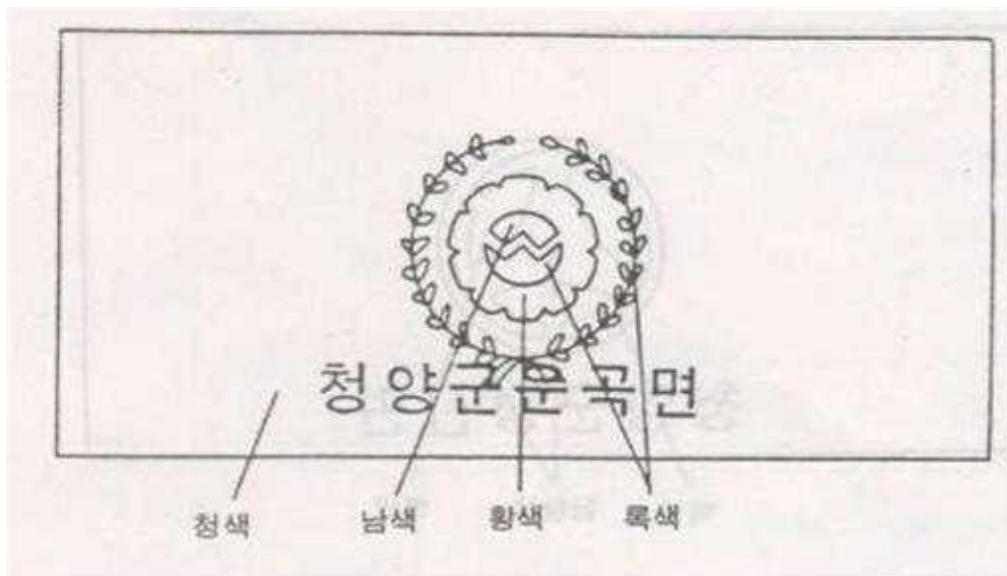
[별표 2의2]

청 양 읍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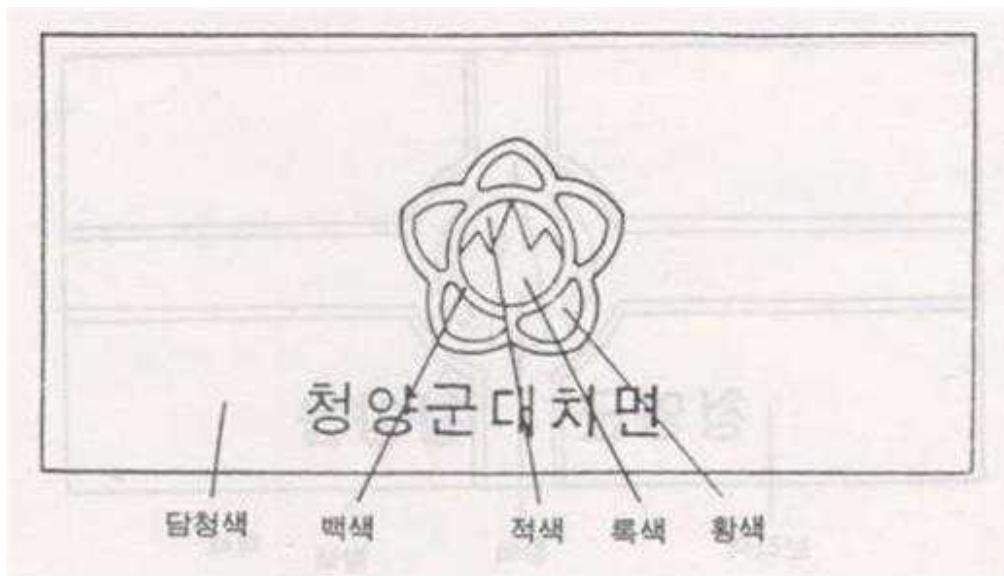
[별표 2의3]

운 곡 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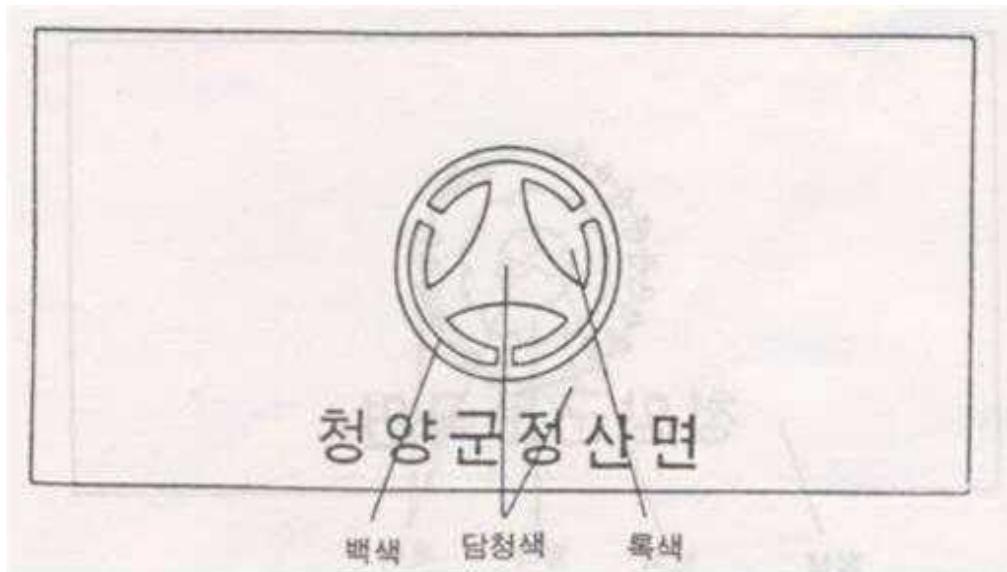
[별표 2의4]

대 치 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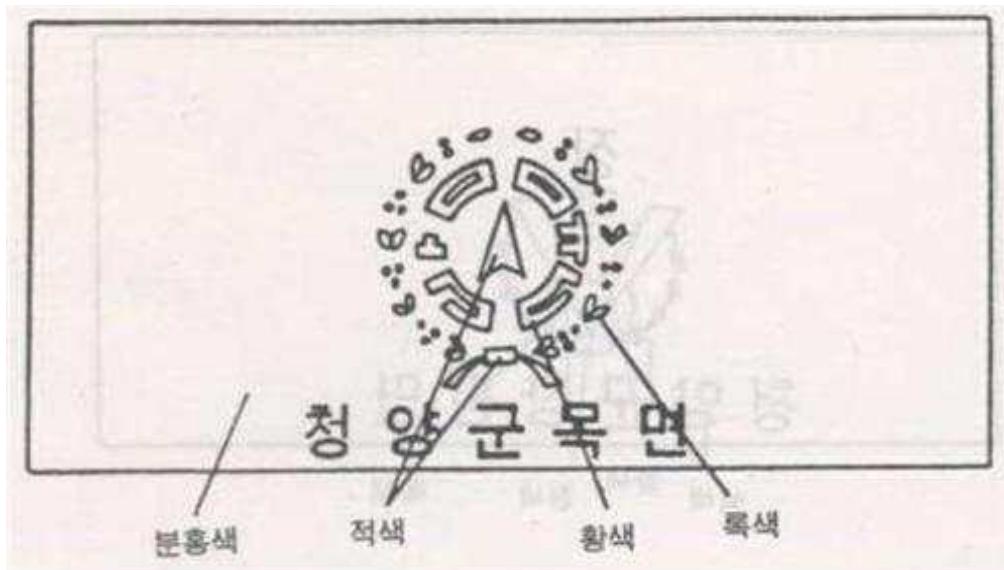
[별표 2의5]

정 산 면 기



[별표 2의6]

목 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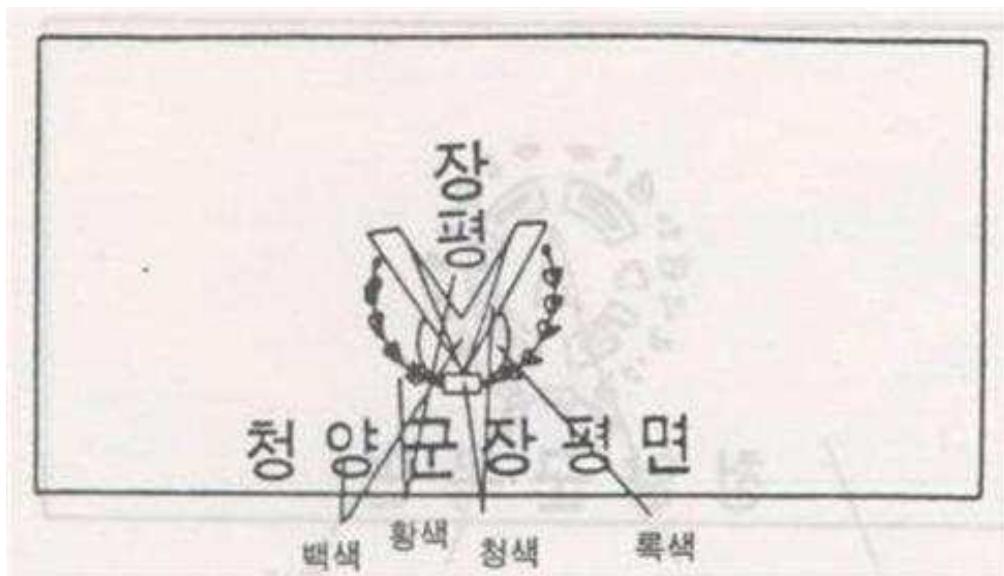
[별표 2의7]

청남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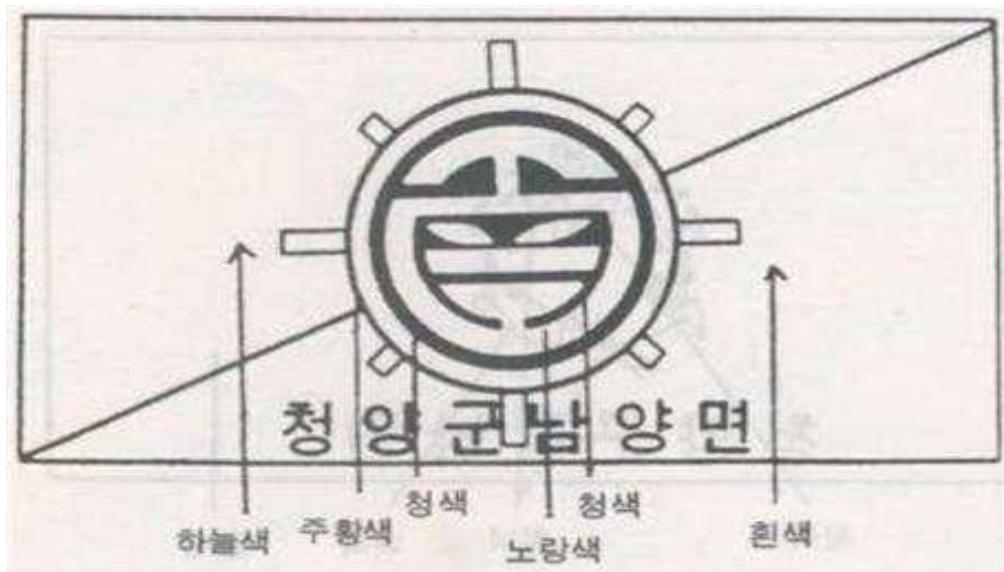
[별표 2의8]

장 평 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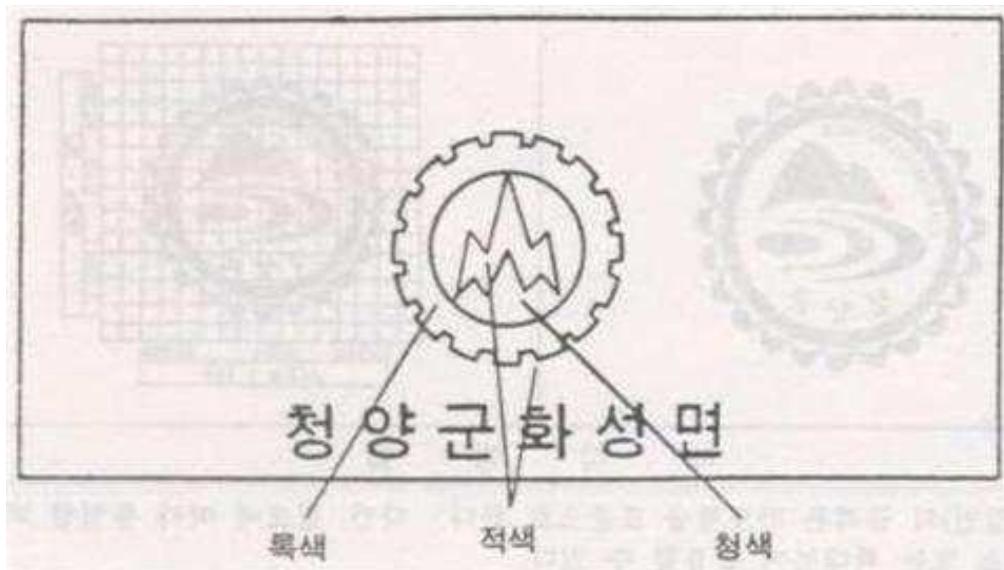
[별표 2의9]

남 양 면 기



[별표 2의10]

화성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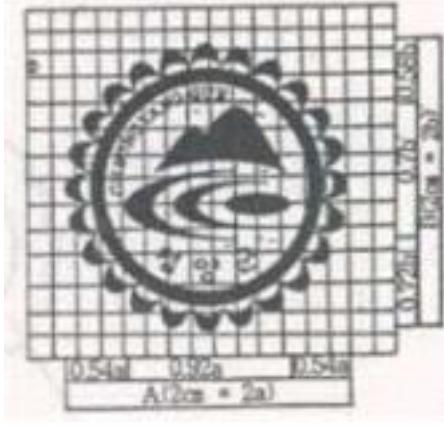
[별표 2의11]

비봉면기



[별표 3의1]

문장(철인)

기본형	작도형
	
제작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문장(철인)의 규격은 작도형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활용할 수 있다.	

[별표 3의2]

휘장

기본형	작도형
제작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휘장의 규격은 작도형을 표준으로 하며 정장은 은으로, 수는 견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하거나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별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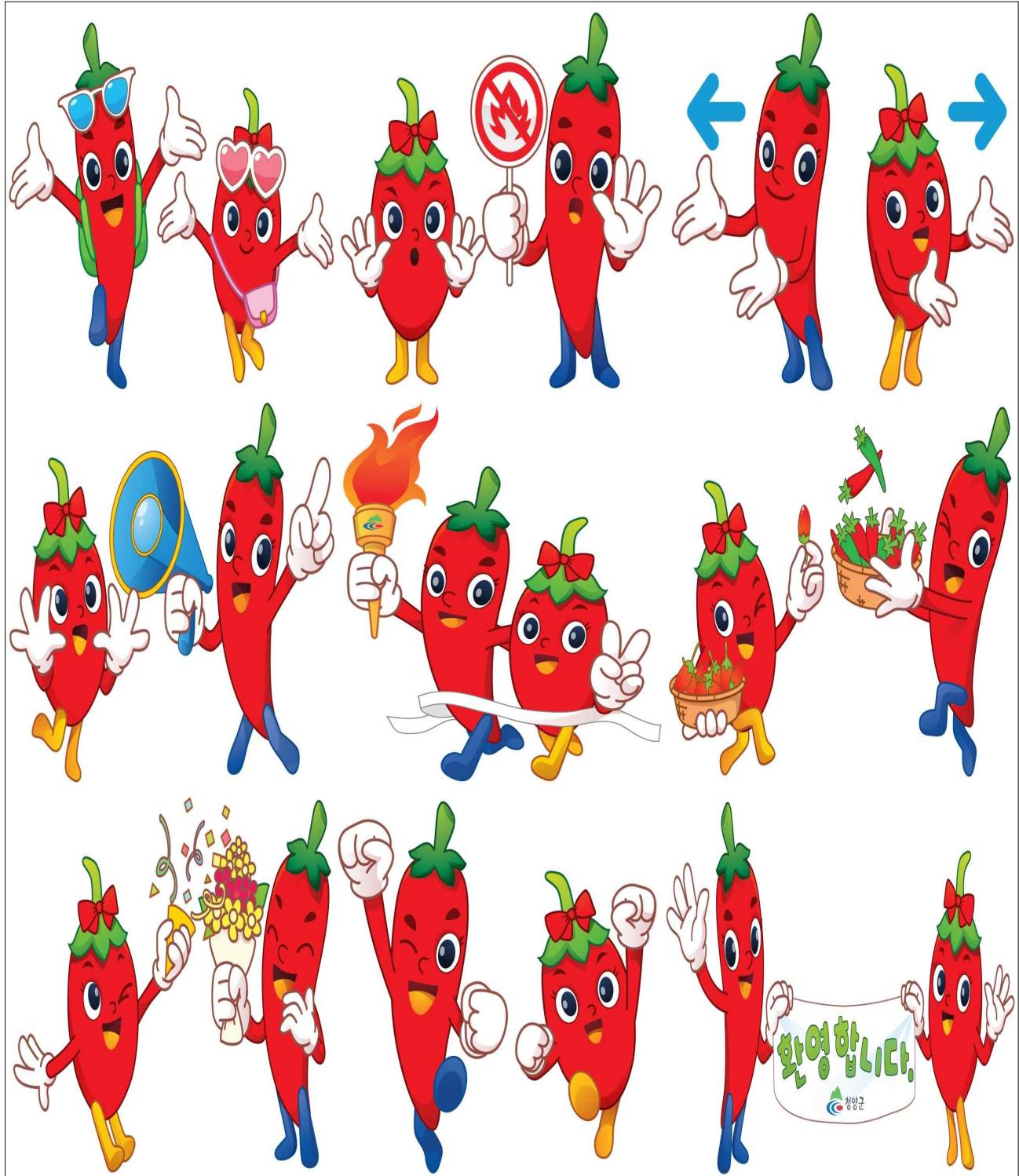
캐 릭 터

명칭 : 고추도령 구기낭자(기본형)



○ 청양군의 캐릭터인 ‘고추도령 구기낭자’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표 농특산물인 고추와 구기자를 모티브로 현대적 감각에 맞게 심플하고 친근감 있는 모습으로 새롭게 디자인하였으며 시인성을 높여 시각화 하였다. 명칭 또한 캐릭터에 부합 하도록 일체감을 도모하여 활용성을 더욱 높였다. 군 캐릭터는 군행정은 물론 각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 하여 청양군의 대외 이미지를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명칭 : 고추도령 구기낭자(응용형 9종)



[별표 5]

군민의 노래

청양군민의노래

김영규 작사
강명규 작곡

명랑하게

[별표 6]

군민현장



우리 청양은 푸르고 깨끗한 살기 좋은 고장이다.
푸른 생명 앞에 떠오르는 밝은 태양이 바로 청양의 정기이다.
그 정기따라 오늘도 칠갑산이 드높고 지천구곡 끝없을 때
우리 군민은 주인으로서 이처럼 아름답다.
우리의 위치는 총청남도의 중심지 총절의 고장임을 자긍하면서
온 군민이 나가야할 바를 다지며,
공명정대한 청양인의 생활지표로 밝힌다.

- 우리는 나부터 먼저 중심을 지켜 최선을 다하는 올바른 생활을 한다.
- 우리는 깨끗한 양심 겸손한 생활로 이웃과 함께 밝은 사회를 이룩한다.
- 우리는 전통문화를 선양하고 청양을 아름답게 가꾼다.
- 우리는 오늘을 새롭고 성실하게 삶으로써 길이 알찬 미래를 확실히 열어간다.



[별지 제1호서식]

휘장수여대장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변경,연장)승인 신청서

신청인	회사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FAX)	
사용 상징물		
사용기간		
사용(변경,연장) 목적		
사용(변경,연장)내용(구체적으로 작성)		
<p>「청양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을 사용(변경,연장)하고자 신청합니다.</p>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		
<첨부 자료>		
① 사용계획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③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8년 12월 15일

청양군 조례 제2322호

청양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월 10,000원 미만인”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로 산정 후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8년 12월 15일

청양군 조례 제2323호

청양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존속기한) 청양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 1. 1일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 · 이송된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8년 12월 15일

청양군 조례 제2324호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 · 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 · 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 “일괄조사 · 결정”을 “일괄 조사 · 결정”으로 한다.

제6조 제목 “(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사용)”을 “(목욕권 및 이 · 미용권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군 소재하는 목욕업소와”를 “군에 소재하는 목욕업소 및”으로, “별도 명시한”을 “적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용권에 따른 지원금을 청구하려는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의 대표자는 매월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을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접수 한 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최초 1회에 한 함)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밖”을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용 대상자가 아닌자가 이용”을 “이용”으로 한다.

제9조 중 “읍·면장”을 “읍장·면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급 청구서

업소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명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청구금액	금	원 (금 원)
사용매수	매	이용자수 명
예금주명	금융기관	
계좌번호		
사업기간	20 . . . ~ 20 . . .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청양군 수귀하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용한 목욕권 및 이·미용권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 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원인	(서명 또는 인)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8년 12월 15일

청양군 조례 제2325호

청양군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양군 노인요양원**”을 “**청양군노인요양원**”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입소대상)**”을 “**(입소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과 2항을 삭제하고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 제목 “**(비용수납)**”을 “**(비용의 청구 및 수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요양원에서 입소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급여비용의 청구 및 본인일부부담금의 수납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법」 제38조 및 「노인복지법」 제46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7조의 제4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8조 제목 “(운영관리)”를 “(운영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군수는”을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으로, “에게 ”을 “에”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상호간”을 “상호 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단서규정”을 “단서 규정”으로 하고, “위탁기간”을 “위탁 기간”으로 하고, “90일전까지”를 “90일 전까지”로 하고, “신청서를”을 “별지 제1호서식을”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기여”를 “이바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관리함에 있어”를 “관리하면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담보설정로”를 “담보설정으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위 · 수탁”을 “위탁 · 수탁”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한다”를 “있다”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으로 하고,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8년 12월 15일

청양군 조례 제2326호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인의”를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의”로,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청양군”을 “위하여 청양군”으로 한다.

제2조 중 ““청양군노인종합복지관””을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으로 한다.

제4조 제4호 중 “교양강좌등”을 “교양강좌 등”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환자

제5조 제2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종료된다**”를 “**끝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한
다.

제10조제2호 중 “**변경할수 없으며 승인을 받아 구조 변경시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단
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
는다.

제10조 중 “**각호**”를 “각 호”로, “**준수하여**”를 “**지켜야**”로 하고, 제10조제3호
중 “**주의의무**”를 “**주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 중 “**만료된**”을 “**끝난**”으로, “**반환하여야**”를 “**돌려주어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이용 또는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제5조에 따라**”를 “**이용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아니**
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상당**”을 “**타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한다.

제15조 전단 중 “**자체규정**”을 “**자체운영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사**

전에”를 “미리”로 한다.

제16조 중 “관계법령 및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를 “관계법령 및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로 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양군 조례 제2327호

청양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입양특례법」”을 “「입양특례법」(이하“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3호까지”를 “제4호까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1년”을 “6개월”로, “부(父) 또는 모(母)”를 “양친(養親)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父) 또는 모(母)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을 “양친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부(父) 또는 모(母)는”을 “양친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父) 또는 모(母)가”를 “양친이”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신청인”을 “신청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	-----	------	-----

입양아동 양 친	성명	(관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입양 아동	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입양기수			
	입양일	년 월 일		
입양 축하금	신청금액	원	입양아동 구분	
			<input type="checkbox"/> 일반입양아동 <input type="checkbox"/> 장애입양아동	
입금 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입양축하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 여부			<input type="checkbox"/> 통지희망(통지를 희망하는 경우만 표기)	

「청양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

청양군수 귀하

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첨부서류	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small>※ 단, 해당서류에 한함</small>)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mm × 297mm [백상지 80g/m²]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관광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8년 12월 15일

청양군 조례 제2328호

청양군 관광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재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단체관광객”이란 20명 이상의 내국인 관광객 또는 10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으로 한다.

4. “관광홍보물”(이하 “홍보물”이라고 한다)이란 군의 관광명소 또는 캐릭터 등 관광자원을 내부와 외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미디어 자료, 인쇄물 등의 자료를 말한다.
5. “관광기념품”(이하 “기념품”이라고 한다)이란 군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홍보를 목적으로 제작한 기념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관광의 진흥 및 지원

제4조(관광개발과 진흥사업 및 홍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개발과 관광의 진흥 및 홍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유휴자원 등의 관광자원화
2.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을 포함한 관광지 개발
3. 관광상품 개발
4. 관광객 편의 증진
5. 관광 관련 축제 및 행사
6.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증진하기 위한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 및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의 지원 사업
7. 경제적 · 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 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8. 홍보물, 기념품 및 관광관련 콘텐츠 등의 개발, 제작, 배포와 같은 관광지 및 특산품 홍보
9.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내외 활동
10.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 및 홍보에 필요한 사업

제5조(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군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이하 “관광사업자등”이라고 한다)에게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단체관광객 유치 및 그와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진흥사업, 관광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재정지원 제외)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여행업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참여나 투어에 따른 관광
3. 군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축제, 팸투어 등)
4. 여행이나 행사일정을 군에 사전 통보하지 않거나 통보하였더라도 지원을 확정 받지 못한 경우
5.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나 임원 및 그 가족
7. 정치 또는 종교 집회 등 관광 목적이 아닌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
8.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군수가 판단한 경우

제3장 관광안내소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및 철거) ① 군수는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안내소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 ③ 군수는 안내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안내소의 시설상태, 안내원 근무상황 등을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 및 기능) 안내소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 및 여행 상담
2. 관광홍보 및 마케팅
3. 관광불편신고와 접수
4. 관광안내를 위한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5. 관광상품 및 기념품 판매
6. 그 밖에 군수가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안내소 운영) ① 안내소의 운영일 및 시간은 근무지의 상황 및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안내소별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과장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안내소 운영을 총괄한다.

제10조(관광안내원의 활용) ① 군수는 각 안내소에 관광안내원(이하 “안내원”이라고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 ② 안내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일반 관광정보 및 부대서비스에 대한 우리말 및 외국어 안내
2. 관광정보 자료 수집·작성·관리
3. 홍보물 등 배포
4. 관광 관련 관광객 의견수렴 및 관리
5. 기념품 및 특산품 전시 홍보 및 판매
6. 관광객 불편신고사항 접수처리
7. 안내소内外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8. 그 밖에 군수가 관광안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청양군 관광협의회

제11조(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8조의9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청양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법에 따라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자
 2. 관광과 관련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
 3. 관광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단체
 4. 관광분야와 관련하여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지역주민 또는 시민단체
- ③ 협의회는 법 제48조의9제4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④ 허가에 필요한 절차 및 요건 등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2조(협의회 운영 및 지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군수는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행정지도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의 자료요구 및 행정지도를 할 수 있으며, 시정 처분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관광진흥업무의 위탁

제14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사업자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대상 업무) ① 제14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 각 호의 사업
 2. 제7조에 따라 설치한 관광안내소의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중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또한 같다.
1. 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2. 위탁업무의 내용
 3. 위탁업무의 개시일
- ③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그에 따르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위탁 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위탁한 관광업무를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장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제17조(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 제3호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18조(포상)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공모전 등 관광산업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법인·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19조(지도·감독)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은 자는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 및 제26조에 따라, 관광진흥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관광사업자등이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광사업자등에게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 · 이송된 청양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8년 12월 15일

청양군 조례 제2329호

청양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양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청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1항”을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으로, “군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 운영에 관하여”를 “청양군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회”를 “청양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업무를 총괄한다”를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군”을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제2항 중 “군수”를 “청양군수”로, “교육장”을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위원중에는”을 “위원 중”으로, “2인”을 “2명”으로 한다.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의장등의 직무)”를 “(의장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의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제6조 제2항 중 “개최하며”를 “열며”로 한다.

제7조 제목 “(간사등)”을 “(간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장이 지명한다”를 “문화체육관광과장이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로 한다.

제8조 제목 “(시행규칙)”을 “(운영세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8년 12월 15일

청양군 조례 제2330호

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을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으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생활폐기물중에서 쓰레기 봉투**”를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로, “**별표6**”을 “**별표 6**”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팩트병, 스티로폼)**”을 “**(페트병, 스티로폼)**”으로, “**아니하고 군수**”를 “**않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관내**”를 “**청양군 (이하 “군”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8호 중 “**완료하는**”을 “**마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 규제법」**”을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3조 중 “**관내**”를 “**군 내**”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아니하였**”을 “**않았**”으로, “**기간내에서**”를 “**기간 내에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이행기간**”을 “**이행 기간**”으로, “**기간내에서**”를 “**기 간 내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조치를 명하 여야**”를 “**의하여 처분을 하여야**”로, “**1과**”를 “**어느 하나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아니하여**”를 “**않아**”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버려두어 주변 환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간내에**”를 “**기간 내**”로, “**이내에**”를 “**이내**”로, “**통보하여야**”를 “**알려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를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는**”으로, “**행정대집행법**”을 “**「행정대집행법」**”으로, “**소요된**”을 “**든**”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할수**”를 “**할 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한다.

제6조 제목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를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초래할**”을 “**불러일으킬**”로, “**불용하는**”을 “**용하지 않는**”으로, “**동의없**”을 “**동의 없**”으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구역안**”을 “**구역 안**”으로, “**읍 · 면 사무소**”를 “**읍사무고 · 면 사무소**”로 한다.

제8조 제목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등)**”을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혼합배출하여서는 아니되며**”를 “**혼합 배출하 여서는 안 되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아니한**”을 “**않는**”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별지 제13호 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별지 제14호 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별지 제15호 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동일한**”을 “**같은**”으로, “**아니**”를 “**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집·운반시**”를 “**수집·운반시**”로,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도로·가로변**”을 “**도로변·가로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후면**”을 “**전면·후면**”으로, “**게재할수**”를 “**실을 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명시하고**”를 “**분명하게 밝히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별표4**”를 “**별표 4**”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표5**”를 “**별표 5**”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읍·면장**”을 “**읍장·면장**”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하며**”를 “**지켜야하며**”로, “**아니 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별표 6**”을 “**별표 6**”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7**”을 “**별표 7**”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상실한**”을 “**잃은**”으로 한다.

제18조 제목 “**(과태료 처분통지등)**”을 “**(과태료 처분통지 등)**”으로 하고, 같

은 조 제1항 단서 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기간내에”를 “기간 내”로, “이내에”를 “이내”로,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19조 중 “없는 한 폐기물관리”를 “없으면”으로, “같은 법시행령 제38조의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을 “60일 이내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를 “알려야”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를 “사람에게도 법원에 알린 사실을 알려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0호 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3조 중 “별지 제11호 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제25조 중 “읍 · 면장”을 “읍장 · 면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8년 12월 15일

청양군 조례 제2331호

청양군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양군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청양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청양군”을 “이 조례는 청양군”으로, “회계는 특별회계”를 “필요한 사항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청양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 중 “특별회계”를 “청양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제3조2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
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중 “조례에”를 “조례에서”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8년 12월 15일

청양군 조례 제2332호

청양군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8년 12월 15일

청양군 조례 제2333호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로서,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 및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과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등을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군과 협약한 신용보

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자 차액의 보전” 이란 소상공인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5. “경영안정지원” 이란 소상공인의 창업·시설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 활동 지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특례보증 지원 등)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한 사람당 3천만원 이내로 한다.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이자 차액의 보전 지원 등)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자 차액의 보전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이 대출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3% 이내로 하며, 이자보전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그 밖의 이자 차액의 보전에 대한 조건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및 창업관련 상담 · 자문 및 교육
2. 제품 디자인,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홍보 및 마케팅 지원
3. 자금 · 인력 · 기술 · 판로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4.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또는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사업장을 휴업 · 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업 · 폐업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국가 및 충청남도로부터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5. 사업장 또는 주민등록을 군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2. 청양군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신용보증 및 이자 차액의 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및 「청양군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용보증 및 이자 차액의 보전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8년 12월 15일

청양군 조례 제2334호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설비”를 “설비의 철거”로 한다.

제6조제3항 본문 중 “아니”를 “안”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양도 도는 대여하거”를 “양도 또는 빌려 주거”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대여할”을 “빌려 줄”로 한다.

제12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을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상실함”을 “잃음”으로 한다.

별표2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현 행			개 정 암																																						
시장 사용료 요율표(제11조 관련)			시장 사용료 요율표(제11조 관련)																																						
1. 시장의 상시 사용료			1. 시장의 상시 사용료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기 준</th><th>사 용 료</th><th>구분</th><th>기 준</th><th>사 용 료</th></tr> </thead> <tbody> <tr> <td>가. 점포</td><td>연간 1제곱 미터당</td><td>토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 른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 의 25 건물 : 「지방세법」의 규정 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td><td>가. 점포</td><td>연간 1제곱 미터당</td><td>토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 른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 의 25 건물 : 「지방세법」의 규정 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td></tr> <tr> <td>나. 노점</td><td>연간 1제곱 미터당</td><td>토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25</td><td>나. 노점</td><td>연간 1제곱 미터당</td><td>토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25</td></tr> </tbody> </table>						구분	기 준	사 용 료	구분	기 준	사 용 료	가. 점포	연간 1제곱 미터당	토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 른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 의 25 건물 : 「지방세법」의 규정 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	가. 점포	연간 1제곱 미터당	토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 른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 의 25 건물 : 「지방세법」의 규정 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	나. 노점	연간 1제곱 미터당	토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25	나. 노점	연간 1제곱 미터당	토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25																		
구분	기 준	사 용 료	구분	기 준	사 용 료																																				
가. 점포	연간 1제곱 미터당	토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 른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 의 25 건물 : 「지방세법」의 규정 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	가. 점포	연간 1제곱 미터당	토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 른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 의 25 건물 : 「지방세법」의 규정 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																																				
나. 노점	연간 1제곱 미터당	토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25	나. 노점	연간 1제곱 미터당	토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25																																				
2. 시장의 일시 사용료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기 준</th><th>사용료(원)</th><th>구 분</th><th>기 준</th><th>사용료(원)</th></tr> </thead> <tbody> <tr> <td>가. 점 포</td><td>1일 1제곱미터당</td><td>300</td><td>가. 점포</td><td>1일 1제곱미터당</td><td>300</td></tr> <tr> <td>나. 노 점</td><td>1일 1제곱미터당</td><td>200</td><td>나. 노점</td><td>1일 1제곱미터당</td><td>200</td></tr> <tr> <td>다. 자 동 차</td><td>대 당</td><td>1,000</td><td>다. 자동차</td><td>대당</td><td>1,000</td></tr> <tr> <td>라. 경운기 등 농업기계</td><td>대 당</td><td>500</td><td>라. 경운기 등 농업기계</td><td>대당</td><td>500</td></tr> <tr> <td>마. 손 수 레</td><td>대 당</td><td>300</td><td>마. 손수레</td><td>대당</td><td>300</td></tr> </tbody> </table>						구 분	기 준	사용료(원)	구 분	기 준	사용료(원)	가. 점 포	1일 1제곱미터당	300	가. 점포	1일 1제곱미터당	300	나. 노 점	1일 1제곱미터당	200	나. 노점	1일 1제곱미터당	200	다. 자 동 차	대 당	1,000	다. 자동차	대당	1,000	라. 경운기 등 농업기계	대 당	500	라. 경운기 등 농업기계	대당	500	마. 손 수 레	대 당	300	마. 손수레	대당	300
구 분	기 준	사용료(원)	구 분	기 준	사용료(원)																																				
가. 점 포	1일 1제곱미터당	300	가. 점포	1일 1제곱미터당	300																																				
나. 노 점	1일 1제곱미터당	200	나. 노점	1일 1제곱미터당	200																																				
다. 자 동 차	대 당	1,000	다. 자동차	대당	1,000																																				
라. 경운기 등 농업기계	대 당	500	라. 경운기 등 농업기계	대당	500																																				
마. 손 수 레	대 당	300	마. 손수레	대당	300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8년 12월 15일

청양군 조례 제2335호

청양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명 “청양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청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설치) 이 조례는 청양군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청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세입세출)”을 “(세입·세출)”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

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8년 12월 15일

청양군 조례 제2336호

청양군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위탁수수료와 관리운영비의 일부 및 노외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보조 및 용자”를 “노상, 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로 하고 제4호 ~ 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기소유 토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용자금
5. 교통행정 및 주차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 제반 경비
6. 교통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7. 그 밖에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존속기한) ① 「지방재정법」 제9조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8년 12월 15일

청양군 조례 제2337호

청양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여함”을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인증받지”를 “인증 받지”로, “기업을 말한다.”를 “기업으로서 충청남도에서 지정을 받은 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3조 제목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양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청양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육성계획”을 “육성지원계획”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사람이 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지역경제과장, 주민복지실장, 농업지원과장
2. 위촉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나. 사회적기업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직원 등

제4조제3항 본문 중 “**위원의**”를 “**위촉위원의**”로, “**하되**”를 “**하며**”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관하여 필요**”를 “**관**”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 제목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을 “**육성지원계획(이하“육성지원계획”)**”으로, “**수립하여야**”를 “**세워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부터 제4항까지 중 “**육성계획**”을 각각 “**육성지원계획**”으로 한다.

제8조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청년창업 등의 발굴·육성) 군수는 사회적경제 청년창업 등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망한 청년예비창업자의 발굴 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2. 청년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3. 청년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예비창업자 또는 일반창업자의 육성

4. 그 밖에 창업교육 및 창업 기반시설 확충 등을 정하는 사업

제9조제1항 중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 할”을 “등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융자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 사용·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등은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불용물품 등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 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명시한”을 “분명하게 밝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수할”을 “돌려받을”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15조 제목 “(그 밖의 관련법령 준수)”를 “(그 밖의 관련 법령 준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8년 12월 15일

청양군 조례 제2338호

청양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양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를 “청양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장기 미집행”을 “장기미집행”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제2호 중 “10~20%”를 “10~20%”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법 제47조제2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8년 12월 15일

청양군 조례 제2339호

청양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

청양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8년 12월 15일

청양군 조례 제2340호

청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촌주택사업이라함”을 “농어촌 주택사업”이라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보고시”를 “보고 시”로 한다.

제3조 제목 “(특별회계설치)”를 “(특별회계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조의”를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로, “동사업”을 “같은 사업”으로, “청양군”을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제목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한다.

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제4조의2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중 “세입을 타”를 “세입은 다른”으로,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6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 제목 “(자금운영)”을 “(용자금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금”을 “용자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군수는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질시”를 “경질 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비를 군 지정은행에게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택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력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청양군수”를 “군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상환방법”을 “상환방법은”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금에”를 “용자금에”로, “범위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1) 중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0조”를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7조”로 하며, 같은 목 2) 중 “체증상환”을 “체증식 분할상환”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택지조성사업

가. 이율 : 무이자

나. 상환방법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다. 상환연체금리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율에 의한다.

제17조 제목 “(자금의 전용금지)”를 “(용자금의 전용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주택사업비는”을 “주택사업 용자금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조례 준칙”을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용자를 받은 자가”를 “용자금을 받은 사람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8년 12월 15일

청양군 조례 제2341호

청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95조”를 “「지방회계법」 제50조”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 제목 “(회계관계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계관계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을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 지출원,”을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 이외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군수”를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회계관계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이내에”를 “이

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회계관계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이루어 진다.”를 “이루어진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하여 체결 할”을 “할”로 한다.

제4조 중 “회계관계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110만원”을 “1천만 원”으로 한다.

제5조 제목 “(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을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에”를 “회계관계공무원에”로 한다.

제6조 중 “회계관계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회계관계 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를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로, “지게되거”를 “지게 되거”로,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을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계관계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 제목 “(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를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증보험 증권”을 “보증보험증권”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 · 이송된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8년 12월 15일

청양군 조례 제2342호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및** 직속기관의 실장 · 과장 등 보조 · 보좌기관의 직급과 실 · 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의** 실장 · 과장의 직급 등과 직속기관 ·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 본청의 실 · 과, 직속기관의 과, 사업소, 읍 · 면의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안전재난과**”를 “**미래전략과, 안전재난과**”로, “**농업지원과**”를 “**농촌공동체과, 농업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국 · 도 · 군정**”을 “**국정 · 도정 · 군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미래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구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2. 공약에 관한 사항
3. 기업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4. 특화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미래전략과 업무에 관한 사항

제3조제6항(종전의 제5항)제3호 중 “**인적·사회적 재난**”을 “**인적 재난·사회적 재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제4호 중 “**상·하수도**”를 “**상수도·하수도**”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일자리 정책에 관한 사항
7. 에너지에 관한 사항

제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농촌공동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공동체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2. 푸드플랜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에 관한 사항

4. 농촌개발에 관한 사항
5.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6 농산물 · 특산물 유통 및 가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촌공동체과에 관한 사항

제3조제12항(종전의 제10항)제4호 중 “**농촌개발**”을 “**농촌기반**”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읍면소재지**”를 “**읍 · 면소재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⑩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농업정책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에 관한 사항
 3. 농산물마케팅에 관한 사항
 4. 원예특작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업정책과 업무에 관한 사항

제3조제14항(종전의 제12항)제6호 중 “**국 · 공유재산**”을 “**국유재산 · 공유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그 밖에 타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제1항 중 “**「지역보건법」 제10조 ·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소관사무**”를 “**소관 사무**”로 한다.

제6조 제목 “**(소관사무)**”를 “**(소관 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관사**

무”를 “소관 사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할구역안”을 “관할 구역 안”으로, “소관사무”를 “소관 사무”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군에 농업기술센터”를 “농업기술센터”로 한다.

제9조 제목 “(소관사무)”를 “(소관 사무)”로 한다.

제12조 제목 “(소관사무)”를 “(소관 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운영관리”를 “운영 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 운영 관리

제12조제1항제3호 중 “공설운동장 운영관리”를 “공설운동장, 다목적 실내체육관, 천장호·장곡지구 운영 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운영관리”를 “운영 관리”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4조제3항·제5항”을 “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 과 제4조제3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읍·면 사무소”를 “읍사무소·면사무소”로 한다.

제15조 제목 “(읍·면장)”을 “(읍장·면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을 “읍장·면장을 두며, 읍장·면장”으로 한다.

제16조 제목 “(부읍·면장)”을 “(부읍장·부면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부읍·면장을 두며, 부읍·면장은 읍·면장”을 “부읍장·부면장을 두며, 부읍장·부면장은 읍장·면장”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96명이며”를 “604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84명”을 “592명”으로 한다.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양군 학교급식지원 특별회계 설치 ·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농업지원과장”을 각각 “농촌공동체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중 “로컬푸드팀장”을 각각 “공공급식팀장”으로 한다.

② 청양군 고추 · 구기자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 농촌공동체과장”으로 한다.

③ 청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 농촌공동체과장”으로 한다.

④ 청양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3항 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 농촌공동체과장”으로 한다.

⑤ 청양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⑥ 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부자농촌팀장”을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

⑦ 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부자농촌팀장”을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

⑧ 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⑨ 청양군 다목적육묘장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⑩ 청양군 농업인의 날 행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⑪ 청양군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⑫ 청양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⑬ 청양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⑭ 청양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촌공동체과장”으로 한다.

⑯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조 중 “기업유치업무 담당주사”를 “기업산단팀장”으로 한다.

⑰ 청양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2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기업유치팀장”을 “기업산단팀장”으로 한다.

⑱ 청양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미래전략과장”으로 하고, “기업유치 팀장”을 “기업산단팀장”으로 한다.

⑲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업유치업무 담당과장”을 “미래전략과장”으로 한다.

제6항 중 “기업유치업무 담당주사”를 “기업산단팀장”으로 한다.

⑳ 청양군 향토유적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예술담당”을 “문화재팀장”으로 한다.

㉑ 청양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농촌공동체과장”으로 한다.

[별표 5]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19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604					
정무직 계	1					
군 수	1	1				
일반직 계	571					
4급	4	3		1		
5급	27	12	3	2	1	10
6급 이하 소계	540					
전문경력관 소계	2					
별정직 계	1					
6급 상당 이하 소계	1					
연구직계	1					
연구사	1					
지도직 계	28					
지도관	3			3		
지도사	25					

청양군의회에서 의결 · 이송된 청양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8년 12월 15일

청양군 조례 제2343호

청양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

2. 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

② 영 별표 9의 제2호다목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

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수의사 면허증 소지자에 한함)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제3조 (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 부터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수의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2조제2항 관련)

지급대상	지급액
가축.동물.축산물의 방역.검역.검사업무에 직접 종사 하는 수의직렬공무원 (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함.)	월 500,000원

청양군의회에서 의결 · 이송된 청양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8년 12월 15일

청양군 조례 제2344호

청양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청양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수당 집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청양군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이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 · 이송된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8년 12월 15일

청양군 조례 제2345호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청양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 위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률에 규정된 군수”를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청양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로,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 단체”를 “법인 · 단체”로, “개인에”를 “개인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위탁받는 군 산하기관 이 아닌”을 “위탁받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이나, 「지방자치단

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으로 한다.

제3조 중 “없는 한 이 조례가”를 “없으면 이 조례로”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령이”를 “법령 및 조례에서”로, “아니하

는”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호 중 “현저히”를 “크게”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경유하여”를 “거쳐”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제4조제4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공개모집을 원칙”을 “공개모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청양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심사가 끝나면 해당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청양군 의원, 관계 공무원 및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회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제7조제7항(종전의 제5항) 중 “군소속”을 “청양군 소속”으로, “「청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수탁자”를 “위탁받은 자”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수탁기관에 대하여”를 각각 “수탁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를 “수탁기관에 알리고 미리”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를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첨부하여 10일 이내에”를 “붙여 10일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를 “이내 이를 심사하고”로,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 · 이송된 청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8년 12월 15일

청양군 조례 제2346호

청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청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8년 12월 15일

청양군 조례 제2347호

청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에 관한 조례”를 “청양군 농업인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농업인의 날”을 “청양군 농업인의 날”로, “개최하고”를 “열고”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이란 ·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 ”를 “이란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따른 자를”을 “해당하는 사람을”로 한다.

제3조 제목 “(개최)”를 “(개최 시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날 행사는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 제2조”를 “날 (이하 “농업인의 날”이라 한다) 행사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로, “개최한다”를 “연다”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달리”를 “다르게”로 한다.

제4조 제목 “(행사내용)”을 “(행사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 · 특산물”을 “농산물 · 특산물”로 한다.

제5조 제목 “(행사의 위탁)”을 “(행사의 경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청양군농업인의날행사추진위원회”를 “청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로,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농업인단체에 위탁”을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 「청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2호가목 중 “농 · 수 · 축 · 임산물”을 “농산물 · 수산물 · 축산물 · 임산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농 · 수 · 축 · 임산물가공”을 “농산물 · 수산물 · 축산물 · 임산물가공”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귀농 · 귀촌”을 “귀농인 · 귀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여할”을 “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농 · 수 · 축 · 임산물”을 “농산물 · 수산물 · 축산물 · 임산물”로, “탁월하여 농업발전에 기여”를 “뛰어나 농업발전에 이바지”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는 제6조제1항의 동일한”을 “사람은 제6조제1항의 같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읍 · 면장”을 “읍장 · 면장”으로, “기관 · 단체장”을 “기관장 ·

단체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위원회**”를 “**청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보하고**”를 “**알리고**”로 한다.

제10조제2호 중 “**국내 · 외**”를 “**국내 · 국외**”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청양군농업인의날행사추진위원회**”를 “**청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지원과장
2. 위촉 위원: 농업인단체의 대표와 농업 관련 기관장 · 단체장이 추천하는 인사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11조제4항 중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하고, “**위촉 직**”을 “**위촉**”으로, “**있다**”를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사 주관 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

제1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업인의 날 수상자 심사 및 결정

제13조제4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4조 제목 “**(행 · 재정적 지원)**”을 “**(행정적 · 재정적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행 · 재정적**”을 “**행정적 · 재정적**”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청양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8년 12월 15일

청양군 조례 제2348호

청양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청양군이**”를 “**청양군 (이하 “군”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대여받아 사용하는 자를**”을 “**대여 받아 사용하는 사람을**”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부과?징수**”를 “**부과 ·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관리 운영**”을 “**관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한다.**”를 각각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농촌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지방공업직,**”을 “**지방농촌지도사, 전문경력관, 지방공업직 및**”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내에”를 “군 내”로, “자에”를 “사람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입회하”를 “참여하”로, “확인 · 점검”을 “확인 · 점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출고일로”를 “출고한 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간내에”를 “기간 내”로, “추후”를 “다음”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개시일”을 “사용허가한 날부터 사용시작일”로, “금융기관에”를 “금융기관에게”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를 “경우에는 사용료를 돌려주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4호에 따른”으로, “잔여일분”을 “남은일분”으로, “반환한다”를 “돌려준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반환하여야”를 “돌려주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반환할”을 “돌려줄”로 한다.

제13조제3호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규정을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망설”을 “규정에 따른 관리를 소홀히 하여 농기계를 잃어버렸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

다.

③ 사용자는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5조제1항 중 “청양군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를 “청양군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을 “위촉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8조 등의 사유로 채움 위촉하는”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으로, “전임자의 나머지”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관리?운영”을 “관리·운영”으로 한다.

제18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호 중 “상실 할”을 “잃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통지하여야”를 “알려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0조 제목 “(비치대장)”을 “(관련 서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장을 비치”를 “대장을 준비”로 하며,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기계 임대사업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농기계 임대사업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5호서식)
3. 농기계 사용료 수납대장(별지 제6호서식)

제21조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목 “임대사업 농기계 관리대장”을 “농기계 임대사업 관리 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목 “임대사업 농기계 사용허가 대장”을 “농기계 임대사업 사용허가 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부품
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8년 12월 15일

청양군 조례 제2349호

청양군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부품센터 운영 조례 일 부개정조례

청양군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부품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양군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부품센터 운영 조례”를 “청
양군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 부품센터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농업기계 순회 수리 및 농기계 부품센터(이하 “순회수리반”이란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관”을 “필요”로, “둔다”를 “한다”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설치)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농기계 부품센터(이하 “순회수리반” 이라 한다)는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둔다.

제3조 제1항 중 “부품대체 기타”를 “부품대체 및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리 자연마을단위”를 “· 리 · 자연마을단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한기등”을 “농한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순회수리시 또는 농업기술센터”를 “순회수리 시 또는 센터”로 한다.

제4조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촌지도사”를 “순회수리반은 지방농촌지도사”로 한다.

제5조 제목 “(수리업무의 전담등)”을 “(수리업무의 전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 제2항 중 ““별표1””을 ““별표 1””로, “비치”를 “준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제7조 제목 “(수리정비 기종)”을 “(수리 · 정비 기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순회수리반이 수리 · 정비하는 농업기계는 다음과 같다.

구분	기 종 명	비 고
경 운 정 지 기	트랙터, 경운기, 관리기	
이 앙 수 확 기	이앙기, 콤바인, 바인더, 탈곡기, 예취기	
방 제 기	동력분무기, 미스트기, 고성능분무기, 인력분무기 등	
기 타	원동기(엔진, 전동기), 양수기, 파종기 등	

제8조 제1항 중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훈련시설내(부품센타)”를 “센터 농업기계 훈련시설 내(부품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긴급을 요할시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를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농업기술센터”를 “센터”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소요되는**”을 “**사용되는**”으로, “**아니하는 범위내**”를 “**않는 범위 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일**”을 “**그날**”로, “**익일**”을 “**다음 날**”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년간**”을 “**연간**”으로, “(**제5호 서식**)을 수립 연중”을 “(**별지 제5호서식**)을 수립 연 중”으로 한다.

제1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기계 수리정비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운영기록부(별지 제2호서식)
3. 부품 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소모품 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
5. 농업기계 순회수리 장비대장(별지 제6호서식)

제11조제6호 중 “(**제7호 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간**”을 “**센터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연간**”으로, “**반상회보**”를 “**청양소식지, 군 홈페이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소장**”으로, “**1주일 전에 읍·면장과 리장에게 통보하고**”를 “**1주일 전에 읍장·면장 및 이장에게 알리고**”로 한다.

제14조 제목 “(**수리곤란기계**)”를 “(**수리가 곤란한 기계의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수리할**”을 “**접수 처리할**”로 한다.

제15조 제목 “(**협조체제유지**)”를 “(**협조체제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소장**”으로, “**원할**”을 “**원활**”로 한다.

제16조 제목 “(장비 등의 망설 또는 훼손)”을 “(장비 등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망설”을 “분실”로, “실비를”을 “실제비용을”로 한다.

제17조 제목 “(예산계상)”을 “(예산 계상)”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8년 12월 15일

청양군 조례 제2350호

청양군 농작물 병해충예찰 ·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청양군 농작물 병해충예찰 · 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 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 “병해충예찰 · 방제”란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예찰 · 방제계획의 수립과 병해충예찰 ·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청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제3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양군 병해충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둔다.

제4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의 단장은 센터 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과 방제반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병해충 업무 관련 공무원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예찰·방제(사전, 사후) 계획의 수립 및 관련사업 추진
2. 병해충예찰·방제 실행 및 지도·점검
3. 중앙 및 도 병해충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
5. 병해충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예찰·방제대책협의회 운영
7.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8. 병해충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

9.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제7조(예찰·방제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예찰·방제단은 예찰·방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예찰·방제대책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찰·방제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센터 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예찰·방제대책협의회 임무) 예찰·방제대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예찰 및 방제에 필요한 농자재 수급방법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긴급 예찰 및 방제 시 홍보 및 동원에 필요한 사항
3. 기타 예찰 및 방제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예산확보)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예찰·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다목적육묘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8년 12월 15일

청양군 조례 제2351호

청양군 다목적육묘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다목적육묘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양군다목적육묘장”을 “청양군 다목적육묘장”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청양군다목적육묘장”을 “청양군 다목적육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양읍”을 “청양군 청양읍”으로 한다.

제4조 중 “육묘”를 “묘”로, “군내에”를 “청양군 (이하 “군”이라 한다)내”로, “해당작목”을 “해당 작목”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중 “육묘”를 각각 “묘”로, 같은 항 중 “별지 제2호의 서식”을 “별지 제2호의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군수는 보급하는 육묘”를 “청양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급하는 묘”로, “신청시기 등을 군청”을 “신청 시기 등을 군”으로, “군민”을 “주민”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추육묘 및 배추육묘”를 “고추묘 및 배추

묘”로 한다.

제7조 전단 중 “**육묘**”를 각각 “묘”로, “**청양군농업기술센터**”를 “**청양군 농업 기술센터**”로, “**무통장 입금**”을 “**입금**”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육묘의 가격은 청양군다목적육묘장운영위원회**”를 “**묘의 가격은 청양군 다목적육묘장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청양군다목적육묘장운영위원회**”를 “**청양군 다목적육묘장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은 청양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농업지원과장, NH농협은행 청양군지부장
2. 위촉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 나. 군내 농업인단체 대표 및 임원
 - 다.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 제2항 중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를 “**품위**”로,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을 “**있으며**”로, “**인하여 새**”를 “**새**”로 한다.

제11조 제목 “**(회의 및 수당)**”을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 중 “**별지 제1호 서식의 청양군다목적육묘장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운영 하여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청양군 다목적육묘장 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운영하여야**”로 한다.

제13조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별지서식 제목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 읍·면 리 **변지**”를 “: 읍·면 **로(길)**”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인)”을 “(서명또는인)”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청양군농업기술센터**”를 “**청양군 농업기술센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육묘신청서

○ 육묘신청내용

작 목	품종명	신청주수 (상자수)	정식예정일 (묘공급일)	공급 금액	비 고

* 육묘형태 : 접목묘() 일반묘()

신 청 자 주소 : 읍·면 로(길)
성 명 : (서명또는인)
연 락 처(☎))

청양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8년 12월 15일

청양군 조례 제2352호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조”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자와 학생중을 소지한 중학생, 고등학생을 말한다.”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군인 :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사람으로 하사 미만의 군인 및 전환복무 중인 사람(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을 말한다.

제3조제6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30인 이상이”를 “3

0명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1년중”을 “1년 중”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국·공립”을 “국립·공립”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휴양림내 동식물”을 “휴양림 내 동물·식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숲사랑소년단”을 “한국 숲사랑청소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소지한 자”를 “가진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제7조제18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 중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하며, 같은 조 제20호를 삭제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래”를 “다음”으로 한다.

제9조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소비자 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을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3”으로, “반환할”을 “돌려줄”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급~3급 장애인은 50%, 4급~6급 장애인은 30%를 감면한다. 다만 비수기 주중에 한하며 1인 1실에 한한

다.

- ③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은 객실요금의 30%를 감면한다. 다만 비수기 주중에 한하며 1가정 1실에 한한다.
- 제11조제2호 중 “개·보수”를 “개수·보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휴양**립관리·운영자가 업무상”을 “**휴양립관리·운영** 상”으로 한다.
- 제13조제1항 중 “부합하는”을 “적합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재정법** 및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한다.**
- 제14조 중 “**청양군일반회계세입**”을 “**청양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 제16조제2항 중 “10만원 미만은 5천원, 10만원 이상은 1만원의 액면가로 입실시”를 “10만 원 미만은 5천 원, 10만 원 이상은 1만 원의 액면가로 입실시”로 한다.
- 제17조 중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를 “**징수의 예에 따른다**”로 한다.
-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시 설 사 용 요 금 표

(단위 : 원)

시설 물명	구 分	사용기간	성수기	비수기 (20%감면금액)	비 고
주차료	경 형	1대/1일	1,000		1000cc미만
	소형.중형	1대/1일	2,000		
	대 형	1대/1일	4,000		
숲속의집	31.0m ² (4인)	1동/1일	75,000	60,000	가족의집 A
	31.0m ² (4인)	1동/1일	75,000	60,000	가족의집 B
	33.3m ² (5인)	1동/1일	80,000	64,000	햇님의집
	33.3m ² (5인)	1동/1일	80,000	64,000	행복의집
	34.5m ² (5인)	1동/1일	80,000	64,000	달님의집
	35.4m ² (5인)	1동/1일	80,000	64,000	사랑의집
	36.0m ² (5인)	1동/1일	80,000	64,000	명상의집
	36.0m ² (5인)	1동/1일	80,000	64,000	은 난 초
	42.1m ² (6인)	1동/1일	90,000	72,000	별님의집
	51.6m ² (8인)	1동/1일	120,000	96,000	금 난 초
	81.0m ² (12인)	1동/1일	160,000	128,000	만남의집
	84.4m ² (15인)	1동/1일	180,000	144,000	대화의집
산림문화휴양관	30.0m ² (4인)	1실/1일	75,000	60,000	관리동(6실)
	30.0m ² (4인)	1실/1일	75,000	60,000	숙박동(16실)
	60.0m ² (10인)	1실/1일	120,000	96,000	교육동(2실)
	226.0m ² (150인)	1실/1일	250,000	200,000	회 의 실
	다만, 휴양관 전체이용자가 회의실 사용시 사용료 면제				
원 두 막	12m ² (2인용)	1동/1일	30,000	-	여 름 용
야 영 장	야영	당일	1조/1일	10,000	할인요금 적용제외
	데크	예약	1조/1일	25,000	
1.	1일 : 시설이용자는 09:00부터 18:00까지, 숙박예약자는 15:00부터 다음날 12:00까지를 말한다.				
※ 1일 미만 이용시에도 1일 이용료 징수					
2.	야영데크 : 당일 이용자는 09:00부터 18:00까지, 숙박예약자는 13:00부터 다음날 12:00까지를 말한다.(숙박예약자는 주차료 및 입장료 면제)				
3.	<u>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u> ◇ 1~3급 장애인은 객실요금의 50% 감면, ◇ 4~6급 장애인은 30% 감면 <u>※ 비수기 주중에 한하며 1인 1실로 제한</u>				
4.	<u>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u> ◇ 객실요금의 30% 감면 <u>※ 비수기 주중에 한하며 1가정 1실로 제한</u>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8년 12월 15일

청양군 조례 제2353호

청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청양군체육회가 주최하는 대회인 경우에는 이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8년 12월 15일

청양군 조례 제2354호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필요한사항”을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청양군”을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문화체육센터”를 “국민체육센터, 문화체육센터”로, “부수된”을 “딸린”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제6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7. “어른”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

은 경로대상자로 한다.

제2조 제9호(종전의 제6호) 중 “체육경기이외”를 “체육경기 이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사람(의무경찰대 대원, 사회복무요원, 해양경비원, 의무소방원 포함)을 말한다.

제3조 제1항 중 “체육시설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체육시설을 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 중 “시설”을 “체육시설”로, “무료시설”을 “무료사용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립하여야”를 “세워야”로 한다.

제4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체육시설 또는 부대시설의 개수 · 보수

제4조 제3호 중 “이용시”를 “이용 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체육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취소 및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제4호 중 “다수인”을 “여러 사람”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관리 및 보호가 필요할 때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체육시설 의”를 “사람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염성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제8조제3호 중 “휴대한”을 “지닌”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사용시”를 “사용 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초과하는” 을 “넘는”으로, “따라 이자”를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초과하여”를 “넘어”로, “1시간당”을 “1시간 당”으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 · 야간”을 “주간 · 야간”으로, “아니한다”를 “않는 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군경”을 “군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아니하 고”를 “않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프로스포츠단과 협 의한 경우 다음”을 “다음”으로,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 를 “해당하면 사용료의 50%를 감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활성화”을 “활성화”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때.”를 “때”로 한다.

제14조 제목 “(관람권 및 입장권)”을 “(관람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관람권 또는 입장권”을 각각 “관람권”으로, 같은 항 중 “사전에”를 “미리”로 한다.

제15조 제목 “(관람수입의 추가징수)”를 “(관람료 수입의 추가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이내에**”를 “**이내**”로 한다.

제16조 제1항 제3호 중 “**유지관리상**”을 “**유지관리 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3호**”를 “**제1항 제3호**”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17조 제목 “**(사용자의 부대시설)**”을 “**(사용자의 설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서식에 따른**”을 “**서식의**”로, “**얻어**”를 “**받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를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사용자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을 따른다.

제18조 제목 “**(양도 등의 금지)**”를 “**(양도 및 전대의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이 조례에 의하여**”를 “**체육시설의**”로,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매**”를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 중 “**초과하여**”를 “**넘어**”로 한다.

제22조 제목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청양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청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23조 제목 “**(위탁운영 관리)**”를 “**(위탁운영 관리)**”로 한다.

제24조 제1항 제3호 중 “**공익상**”을 “**공익 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

보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제25조 중 “이”를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하여 이”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 및”을 “정하지 않은 사항은”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제2호 중 “훼손시”를 “훼손 시”로 하고, 같은 서식 제3호 중 “설치시”를 “설치 시”로 하며, 같은 서식 제4호 중 “종료시”를 “종료 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 공설운동장 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별	사 용 시 간	체육경기		체육경기이외 행사		비 고
		평일	공휴일 (토.일)	평일	공휴일 (토.일)	
청 양 공 설 운동장	트 랙	오 전 (08:00~12:00)	30,000	40,000	60,000	80,000
		오 후 (12:00~18:00)	40,000	50,000	70,000	90,000
		야 간 (18:00~22:00)	50,000	60,000	80,000	100,000
	필 드	오 전 (08:00~12:00)	100,000	120,000	150,000	200,000
		오 후 (12:00~18:00)	110,000	130,000	170,000	250,000
		야 간 (18:00~22:00)	120,000	150,000	200,000	300,000

* 축구경기의 경우 ⇒ 2시간을 1회로 본다

□ 공설운동장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부 대 시 설 사 용 료			
시설부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음향시설	1회	50,000	마이크 사용 1개당 5,000원추가
조 명 탑	1회	100,000	
전 광 판	개방안함	개방안함	

□ 군민체육관 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별	사 용 시 간	체육경기		체육경기이외 행사		비 고
		평일	공휴일 (토.일)	평일	공휴일 (토.일)	
청양군민체육관	오전 (08:00~12:00)	80,000	100,000	150,000	200,000	
	오후 (12:00~18:00)	90,000	120,000	170,000	250,000	
	야간 (18:00~22:00)	100,000	150,000	200,000	300,000	

□ 군민체육관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부 대 시 설 사 용 료			
시설부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음향시설	1회	50,000	마이크 사용 1개당 5,000원추가
전기(조명)	1회	100,000	오전, 오후, 야간 각 1회로 본다
스코어판	1회	50,000	
냉.난방	1회	150,000	

□ 문화체육센터 사용료

(단위 : 원)

시설별	사용시간	체육경기		체육경기이외 행사		비고
		평일	공휴일 (토.일)	평일	공휴일 (토.일)	
청양군문화체육센터	다목적 경기장	오전 (08:00~12:00))	40,000	50,000	60,000	70,000
		오후 (12:00~18:00))	50,000	60,000	70,000	80,000
		야간 (18:00~22:00))	60,000	70,000	80,000	90,000
	전시실 및 기타실	15,000	20,000	15,000	20,000	

□ 문화체육센터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전기 및 냉난방시설 사용료			
시설별	기준	사용료	비고
다목적경기장	1회	70,000	
전시실 및 기타실	1회	10,000	오전, 오후, 야간 각 1회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청자	주 소								
	단 체 명				전화번호 (H. P)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기본 시설	사용장소								
	사용기간	~			사용시간	~ (시간)			
	행 사 명	(참가인원 : 명)							
부대 시설	시 설 명	수 량	시 설 명	사 용 유.무	시 설 명	사 용 유.무			
	음향시설		냉.난방		스코어판				
	마 이 크		조명(전기)						
관람권	구 분	금액	매수	구분	금액	매수	구 분	금액	매수
	초대권			어린이			청소년		
	군 인			일 반			노 인		
	어린이 (단체)			청소년 (단체)					
<p>「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신 청 인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청 양 군 수 귀하</p>									

체육시설 대관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청양군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체육시설(군민체육관, 문화체육센터, 공설운동장) 대관 관리 및 대관료 고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 집 목 적	보유 기간
주소,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대관 관리, 대관료 고지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1. 신청자 주소 :

단 체 명 :

성 명 :

2. 기본시설

체육시설명	목 적	사용기간	사용시간	비 고

3. 부대설비

설비명	수 량	설비명	수 량	설비명	수 량

4. 관람료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예매처

5. 사용료

구 분	금 액	산 출 기 초	비 고
기본사용료			

6. 허가조건 : 붙임

위와 같이 허가 변경허가 함.

년 월 일

청 양 군 수

허 가 조 건

1. 사용자는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및 그 밖의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외부의 경비 등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만일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다.**
3. 체육시설 내에서는 임의로 별도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필요 시에는 사전에 신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선전물 등을 임의로 게시 또는 전열할 수 없으며, 필요시에는 사전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체육시설을 청결하게 사용 유지하고 행사 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소비용을 별도로 부담 하여야 한다.
6. 집회허가 및 공연신고는 사용자가 하여야 한다.
7. 체육시설 내에서는 주류, 음료 등 음식물 반입, 판매 및 취사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체육시설 중 실내의 경우(문화체육센터, 군민체육관) 사용 시 마룻바닥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구두 및 하이힐 등은 착용을 금지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마룻바닥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수리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8. 흡연구역 이외의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시설물 반입신청서

■ 시설물 반입목록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5. _____
6. _____
7. _____
8. _____
9. _____
10. _____

■ 시설물 반입조건

1. 신고한 시설물 이외의 설비는 반입 및 설치를 금지한다.
2. 반입물 설치 시 청양군 체육시설내의 시설물 훼손 시 모두 변상한다.
3. 청양군 체육시설내의 외부시설 반입 설치 시 09:00 ~ 18:00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행사 종료 시 외부 반입 시설물을 모두 회수한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청 양 군 수 귀하

청양군의회에서 의결 · 이송된 청양군 관정시설물 개발 및 운영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8년 12월 15일

청양군 조례 제2355호

청양군 관정시설물 개발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농업용 관정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형관정”이란 일일 지하수 채수량 50톤 미만의 관정을 말한다.
2. “중형관정”이란 일일 지하수 채수량 50톤 이상 150톤 미만의 관정을 말한다.
3. “대형관정”이란 일일 지하수 채수량 150톤 이상의 관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비, 도비, 군비를 주요 재원으로 하여 관내에

설치한 모든 농업용 관정시설물(이하 “관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계획수립)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관정 개발을 위하여 사업규모, 사업의 우선순위, 사업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신청) 관정이 필요한 법인·단체 및 개인은 제4조의 사업계획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사업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지원) 군수는 관정개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중·소형 관정에 대한 개발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을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제7조(관정의 개발) ① 관정 개발 부지는 관정을 개발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이하 “개발자”라 한다)이 확보하여야 한다.

② 대형관정 개발은 수혜면적이 5ha 이상의 집단화 된 농경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다만, 5ha 미만의 농경지에 대해서도 지역을 특성을 고려 할 때 가뭄해소를 위해 대형관정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형관정을 개발할 수 있다.

③ 중·소형 관정의 개발은 관정을 개발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이 사업 추진 전에 자부담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자의 선정) ① 군수는 관정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조에 따라 마을이장 또는 관정시설 수혜자 중에서 1인을 관리자로 선정한다. 다만, 관정 수 및 수혜면적에 따라 2인 이상의 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9조(관리자의 임무) ① 관리자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관정의 상태를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2. 관정은 임의 처분하지 못한다.
3. 관정이 망실, 파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관정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관정의 이용대장
2. 관리비 수입 지출대장
3. 이용자 명단, 지번, 지목, 지적
4. 그 밖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대장

③ 관리자는 관정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안내판을 관정시설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관리자가 관리자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관리자를 해임하고, 새로운 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관정의 유지·관리) ① 군수는 대형관정에 대하여 가동상황 점검 등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정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은 개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관정 이용에 든 인건비
2. 유류비 및 공공요금
3. 부속품 구입비 및 수선비
4. 그 밖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대형관정이 천재지변이나 시설물 노후 등으로 유실 또는 폐기되었을 때에는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에 드는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변상) 군수는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비용이 관리자의 고의로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자로 하여금 원상복구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에 관한 사항은 「지하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이 관정은 청양군의 보조지원을 받은 시설입니다.

- 사업년도:
- 관정구분:
- 수혜면적 및 지번:
- 사업비: 총 원(보조:) 자부담:
- 관리자
 - 성명:
 - 연락처: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8년 12월 15일

청양군 조례 제2356호

청양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양군의회**”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청양군의회**”로 하고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 중 “**상임위원회위원장**”을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얻어**”를 “**받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청양군의회내에**”를 “**청양군의회 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얻은**”을 “**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의회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진다. 이 경우 해당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해야 한다.

제5조 중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관리) ① 공인은 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

② 공인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영부에 보존하되, 사고 발생 시 별지 제3호 서식 공인의 사고보고서에 따라 지체 없이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제1항 중 “년월일”을 “연월일”로 “가운데”를 “가운데”로 한다.

제8조 제목 “(재교부 및 폐기)”를 “(재등록 및 폐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명시하여”를 “분명하게 밝혀”로, “재교부를”를 “재등록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 폐기 공인란에 등재하고 폐기된 공인은 소각하거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그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별도 보존 관리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공고) 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청양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별표 중 “청양군의회 상임위원회위원장인”을 “청양군의회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인”으로 한다.

별지서식 제목 “(별지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별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중인 공인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지 제2호서식)

인 영 부(제6조 관련)

날인년월일 공인명	년 2월 1일 현재	년 2월 1일 현재	년 2월 1일 현재	년 2월 1일 현재
	년 신조 개각	년 신조 개각	년 신조 개각	년 신조 개각

(별지 제3호서식)

기 관 명 (제6조 관련)

문서번호 (전화번호)

시행일자

수 신 발 신 (인)

참 조

제 목 공인 사고보고서

1. 사고인영

2. 사고발생일시 및 장소

3. 사고내용

4. 사고후의 처리전말

5. 기타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양군수 김돈곤 인

2018년 12월 15일

청양군 규칙 제1222호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군 본청의 실·과장”을 “청양군 본청의 실장·과장”으로, “읍·면장”을 “읍장·면장”으로 한다.

제2조 중 “실·과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제3조 중 “군 본청에 기획감사실장·민원봉사실장·주민복지실장·안전재난과장·문화체육관광과장·환경보호과장·농업지원과장·지역경제과장·건설도시과장·산림축산과장·재무과장·행정지원과장”을 “청양군(이하)군 “이라 한다.)본청에 기획감사실장·민원봉사실장·주민복지실장·미래전략

과장 · 안전재난과장 · 문화체육관광과장 · 환경보호과장 · 농촌공동체과장 · 농업정책과장 · 지역경제과장 · 건설도시과장 · 산림축산과장 · 재무과장 ·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실 · 과장의 직급)”을 “(실장 · 과장의 직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실 · 과장”을 “실장 · 과장”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실 · 과장의 사무분장)”을 “(실장 · 과장의 사무분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실 · 과장”을 “실장 · 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진료부”를 “진료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진료부장”을 “진료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조례 제7조제3항”을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으로 한다.

제13조 제목 “(읍 · 면장)”을 “(읍장 · 면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읍 · 면장”을 “읍장 · 면장”으로 한다.

제14조 제목 “(부읍 · 면장의 직급)”을 “(부읍장 · 면장의 직급)”으로 한다.

제15조 중 “읍 · 면장”을 “읍장 · 면장”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양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① 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② 청양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촌공동체과장”으로 한다.

③ 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청양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미래전략과장”으로 하고, “기업유치팀장”

을 “기업산단팀장”으로 한다.

⑤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업유치업무 담당과장”을 “미래전략과장”으로 한다.

제6항 중 “기업유치업무 담당주사”를 “기업산단팀장”으로 한다.

⑥ 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별표 1]

본청 실장·과장의 직급

(제4조 관련)

실 · 과명	직 위	직 급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지방서기관 · 지방행정사무관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장	지방서기관 · 지방행정사무관
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장	지방행정 · 사회복지사무관
미래전략과	미래전략과장	지방행정 · 농업 · 시설사무관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장	지방행정 · 시설사무관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장	지방행정 · 시설사무관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지방행정 · 환경 · 시설 · 공업사무관
농촌공동체과	농촌공동체과장	지방행정 · 농업사무관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지방행정 · 농업사무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지방행정 · 공업 · 시설사무관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장	지방시설사무관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장	지방행정 · 농업 · 녹지사무관
재무과	재무과장	지방행정 · 농업 · 시설사무관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지방행정 · 농업 · 시설사무관

[별표 2]

군 본청 실장·과장의 분장사무 (제5조 관련)

실·과장	팀	분 장 사 무
기획 감사실장	기획평가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정 전반에 관한 연구 및 종합기획·조정 2. 지시사항 3. 군정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4. 정책자문단 및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5. 군의회 지원 및 협조 6. 당면사항 및 현안사항관리 7. 군정의 창의·실용적 발전연구 8. 균형발전업무에 관한 사항 9. 포괄보조사업 10. 공모사업 발굴·총괄 및 제안제도 운영 11. 성과 및 목표관리제, 자체평가 운영 12. 위임사무 등에 대한 시군 평가 업무 13. 실 소관 업무의 종합 기획·조정 및 그 밖에 기획감사실 업무에 관한 사항
	예산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재정운영, 사업예산편성 및 집행의 감독 2. 주요 재정사항 합의 및 검토 3.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주요사업 심사 4. 예비비관리 5.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 6. 이월사업관리(계속비, 명시, 사고) 7.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신청관리 8. 기금 운용계획수립 및 총괄관리 9. 정부예산 확보 및 현안사업 관리 10. 예산공시 및 주민참여 예산운영 11. 재정진단 분석 및 예산절감계획 수립 운용 12.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13. 지역발전 특별회계

실·과장	팀	분장사무
기획 감사실장	감사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군 행정의 감사계획과 시행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 및 요구사항 처리 공직기강 확립 및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 및 예방대책 민원사무 처리상황 점검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계약심사 업무
	법무규제 혁신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법규제정·개정·폐지 등 법제에 관한사항 각종 소송수행 및 행정심판 지원 행정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 및 개선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 개선 규제혁신 추진 관련 평가 대응 정부혁신 업무추진(평가·과제·교육) 지식행정 운영 및 일하는 방식개선 창조·혁신 공무원 발굴 및 포상 그 밖에 법무규제혁신 업무에 관한 사항
	정책홍보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홍보계획의 수립 시행 언론 보도자료의 수집과 배포에 관한 사항 사회단체 관리(자유총연맹) 군정소식지 발간 군정수행 관련 영상 및 사진 촬영 및 관리 언론매체 협조

실·과장	팀	분장사무
민원봉사실	민원팀	1. 창구 즉결민원 발급 및 민원안내 2. 민원24 접수 및 교부 3. 민원서류의 접수 및 수발 통제 4. 민원행정 제도개선 및 지도 5. 철도 승차권 발매 6. 민원조정위원회 및 실무종합심의회 총괄 7. 민원1회방문처리 창구 운영 8. 여권신청 및 교부 9.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청양읍) 등록 및 말소 10. 외국인체류지 변경등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 11. 실 소관업무의 종합기획조정 및 그 밖에 민원봉사실 업무에 관한 사항
	복합민원팀	1. 농지전용신고 · 허가(협의) 및 준공(복합민원) 2. 산지전용신고 · 허가(협의) 및 준공(복합민원) 3. 개발행위허가(협의) 및 준공(복합민원) 4. 그 밖에 복합민원 관련 업무
	부동산 관리팀	1.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2. 개별공시지가의 특성조사 및 산정 3. 표준지 관리, 지가의 결정 및 공람 4. 부동산거래 신고 및 허가, 검인 5. 부동산 중개업 등록 및 지도단속 6. 부동산 투기억제 및 실명제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토지관리 업무 8. 개별 공시지가확인원 열람 및 교부 9.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10. 그 밖에 부동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지적팀	1. 지적공부 및 지적서고 관리 2. 지적측량 검사 3. 지적에 관한 진정, 질의, 탄원서 처리 4. G.P.S 상시관측소 운영 및 지적기준점 관리 5. 지적측량결과 A/S제도 및 지적민원 해피콜센터 운영 6. 토지 이동 민원처리 및 지적공부 정리 7. 지적문서관리시스템 관리운영

실·과장	팀	분장사무
	지적팀	8. 지적통계 관리 9.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10. 토지 등에의 출입허가 11.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12. 지적재조사 업무 13.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14.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 추진 15.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관리
민원 봉사실장	공간정보팀	1. 공간정보(GIS) 구축 및 운영 2.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 3.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구축 및 운영 4. 건물통합 D/B 구축 및 운영 5. 도로와 지하시설물(상하수도) 전산화 6. 공간정보시스템 보안관리 7.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 변경 · 폐지 등에 관한 사항 7. 도로명 및 건물 D/B 운영 및 관리 8. 도로명주소 기초구역 설정 운영 9.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10. 항공사진 촬영 및 개선 11. 수치지도 제작 및 관리 12. 국토정보시스템 운영 및 조상땅 찾기 사업 13. 지적업무(소유권 확인) 국가소송수행 14.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 및 관리 15. 소유자 주소등록에 관한 사항 16. 등기필 소유권 전산입력 17. 지적민원(창구즉결)발급 및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록번호 부여 18. 국가기준점 조사 및 등록 19. 지명업무

실·과장	팀	분장사무
민원봉사실장	건축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허가(신고)업무 2.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 허가(신고)업무 3. 건축물대장 관리 및 발급 4. 건축업무 전산화 및 통계 5. 건축행정선진화 업무추진 6.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7. 건축물 변경 등기촉탁제 관리 및 실시. 8. 소규모 건축물 안전점검 9. 녹색건축물 인증관리 및 처리 10.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원서비스 추진 11. 민간 건축물 내장재 유지·관리 점검 업무 12. 건축사(사무소) 지도·관리 13. 청양군건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실시 14. 건축물 생애이력시스템 관리 및 안전검사실시 15. 자연재난 사고 및 건축물 재난 점검 관리 실시 16.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실시 17. 관내 방치건축물 조사 및 유지관리 점검
	위생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2.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지도감독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항 4. 위생업소 행정처분 및 고발에 관한 사항 5. 식품진흥기금 운영관리 6. 위생업소 인·허가 신고 및 관리 7. 위생업 종사자 교육 및 지도 8. 공중이용시설 지도관리 9. 집단급식소 관리 및 모범업소 관리 10. 집단 식중독 예방에 관한 사항 11. 식중독예방홍보 및 집중관리업소 관리 12.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13. 불량식품 근절업무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 14.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관리 15.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실·과장	팀	분장사무
주민 복지실장	복지기획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 소관 업무의 종합기획·조정(서무) 2. 주민생활지원서비스실시계획 수립 3. 지역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시행 4. 사회복지시설 관리 5.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 6. 군 복지회관 관리 7.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 등 저소득층 지원 업무 8.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및 지원 업무 9.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10. 자활근로사업 추진 11.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12. 복지행정 종합 평가 13. 행려자 관리 및 무연고 사망자 처리 14. 국가유공자 등 위문관련 업무 15. 실 소관 업무의 종합 기획·조정 및 그밖에 주민복지실 업무에 관한 사항
	경로복지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인 일자리 창출, 고령화 대책업무 2. 기초연금, 장수수당 지급 3. 경로당 운영지원 및 활성화 4. 독거노인, 재가노인(바우처사업, 식사배달)지원 5. 재가노인 복지시설,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6. 노인회 활성화 및 행사지원 7. 노인 요양시설 운영 8. 장사시설(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 9. 노인여가 복지시설설치 및 운영 지원 10. 시니어클럽 및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11. 노인돌봄사업(기본, 종합)지원 12.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실·과장	팀	분장사무
주민 복지실장	여성 다문화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정책 및 권익증진사업 2. 여성교육 및 복지 3.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 4. 공공기관 성희롱예방 5.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 6. 성별영향평가 분석 7. 양성평등 정책 및 교육 8.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추진 9. 국제 결혼중개업 관리 및 감독 10. 어린이집운영 및 보조금 지원 11. 어린이집 설치인가 및 보육교직원 관리 12. 어린이집 평가인증관리 13. 어린이집 지도 점검 14. 보육대상자 선정 및 지원 15. 양육수당 대상자 선정 및 지원 16. 다문화가족 지원(모국방문, 자격증 취득) 17. 다문화가족 합창단 운영 1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19. 외국인주민조사 · 관리 20.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아동 청소년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3.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4.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및 지도 · 감독 5. 아동복지 증진 및 시설관리 6.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추진 7. 지역아동센터 운영 추진 8. 아이돌봄지원사업 추진 9. 한부모가족 지원 10. 저소득층 아동 지원 11. 아동급식 지원 업무 12.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실·과장	팀	분장사무
	장애인 복지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 복지증진시책 2. 장애인 생활안정 및 편의증진 지원 3. 장애인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 4.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5. 장애인연금 및 수당지급 6. 장애인 활동 지원 업무 7. 장애인단체 활동 지원 8. 장애인 일자리업무 9. 장애인 등록업무
주 민 복지실장	희망복지 지원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자원의 발굴·동원 연계관리 2. 사회복지서비스 실시(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 3. 보건 및 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4. 긴급복지지원 5.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관련 업무 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업무 7. 지역사회협의체. 8. 통합사례관리 업무 및 민·관협력 업무 9.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자 관리 10. 자원봉사 홍보 및 활성화 추진 11. 이웃돕기 및 후원결연, 민간 네트워크 구축 12. 가로등 설치 및 관리 13. 마을봉사의 날 운영 14. 민원처리방에 관한 사항
	통합조사 관리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 통합조사 2. 복지급여대상자 중지 및 보장 변경 업무 3. 복지대상자 제외 시 서비스 연계 의뢰 4. 신규 신청자 이의 신청 처리

실·과장	팀	분장사무
미래전략과장	미래정책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출산(고령) 인구정책 통합조정 및 기획 저출산(고령) 인구정책 시책 발굴 추진 청년정책 세부계획 수립·시행 청년정책 발굴 및 지원 공약사항 관리 및 운영 4차산업 및 청양미래 생존전략 개발
	기업산단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기업투자유치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및 SOC 지원업무 중소기업 육성지원 광업 업무 그 밖의 기업유치·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업무
	특화관광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매운고추체험나라 조성 3. 칠갑호 및 천장호 관광명소화 사업 천장알프스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금강체험테마단지조성 장곡 제3주차장 조성 둘레길 정비 및 지천 테마길 조성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증축·콘텐츠 강화 및 진입로 확포장 9. 그 밖의 관광개발에 관한 업무

실·과장	팀	분장사무
안전 재난과장	안전관리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정책 총괄 및 조정 2.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3. 재해시스템 설치 운영 및 재난 사전대비 업무 4. 지역단위 재난예방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5. 재난 대비·대응 대책의 수립 및 운영 6. 안전문화 실천운동 추진 및 교육·홍보 7. 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8. 사회재난 대응 훈련 및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9. 안전신고 업무 10. 재난대비 행동매뉴얼 관리 및 운영 11.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12.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검사 관리 등 13. 물놀이 안전관리 14. 재난징후정보 관련 사항 15. 재난대비 자원관리 16. 국민안전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17.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안전교육 18. 이재민 대책 및 구호물자 등 자원관리 19. 승강기 관리 및 안전점검 20. 과 소관 업무의 종합 기획·조정 및 그 밖에 안전재난과 업무에 관한 사항
	자연재난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재난(풍수해, 대설, 지진, 가뭄, 폭염) 대책 2. 재해 응급 대책 및 재해 재난 복구지원 총괄 3.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재난지원금 지원 4. 유도선·수상레저 업무 5. 재해위험지구 및 서민밀집지역 정비 6. 재난재해 예방 및 정비사업 7. 급경사지 및 재해 취약지 관리 8. 풍수해 보험 업무 9.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10. 사전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11. 재해정보지도, 침수흔적도 관리

실·과장	팀	분장사무
안전재난과장	자연재난팀	12. 방재성능 목표 설정 및 운영 13. 재난관리실태 공시 14. 자연재난 마을 만들기 15. 재난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예·경보시스템 관리·점검 16. 재난관리시스템(NDMS) 관리 17. 자연재난 대비 훈련
	특사경지원팀	1. 특별사법경찰 지명 및 관리 2. 특별사법경찰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3. 민생팀(원산지표시, 식품 등)지도단속 4. 민생팀 위반사건 수사 송치 5. 부서별 특별사법경찰 업무 지원 및 총괄 6.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 7. 인적·사회적 안전(4대악)에 관한 사항 8. 원산지 표시, 식품안전 홍보·캠페인 9. 그 밖에 특사경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하천관리팀	1.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2. 하천 및 소하천 정비계획 3. 고향의 강 정비사업 계획 및 사업추진 4.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5. 하천 및 소하천 부속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 6. 수문관리 7. 하천 및 소하천 보상업무 8.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의 공작물 설치허가 9. 하천 및 소하천 점·사용허가 10.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부과 11. 폐천부지 관리계획 수립 및 재산관리 12. 하천 및 소하천 소송관련 업무 13. 지방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 14. 하천 불법시설물등 지도 단속 15. 금강살리기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실·과장	팀	분장사무
	민방위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방위 계획의 수립 및 민방위 자원관리 2. 충무계획 수립 총괄, 향토예비군 지원업무 3. 지역방위협의회 운영 4. 전시 민방위 계획 및 인력동원계획 수립 및 실시 5. 민방위대 주요시설의 보호관리 및 장비의 유지 관리 6. 소방관서 및 119 구조대와의 협력 유지 7. 의용소방대 지원 및 소방대기소 관리 8.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9. 헬기장 유지보수 사업 10. 그 밖에 민방위, 소방업무에 관련된 사항
안전 재난과장	통신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신시설 현대화 계획수립 및 추진 2.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운영 3. 도로 및 어린이보호, 마을방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운영 4. 통신시스템 운영관리 (교환기, FAX, 영상회의시스템 등) 5. 청내 각종 회의실 음향시설관리 6. 청내 회의 방송시설 운영관리 7. 각종 인터넷 전용회선 관리 8. 국가정보통신망 및 구내네트워크(LAN) 시설 운영관리 9. 군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 청사 신증축 시 설계검토 10.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11. 그 밖에 통신에 관한 사항

실·과장	팀	분장사무
문화체육 관광과장	문화예술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 문화시설, 문화산업 육성 및 창달 문화예술단체의 육성지도 문화예술행사 및 전람·전시회 개최 칠갑문화제·장승축제 등 문화행사 주관 지방문화원 관리 및 활동사업 지원 군지 및 향토지 발간 정산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지원 작은도서관 조성·운영지원 및 실태조사 출판 및 종교 관리 영화, 음악, 게임, 출판 음반 및 게임물, 노래연습장업 지도관리 통합 문화이용권사업 소규모 및 소외지역 문화활동 지원 과 소관 업무의 종합 기획·조정 및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과 업무에 관한 사항
	관광정책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관광정책 및 홍보계획 수립 관광홍보물 제작 및 관광상품 개발 관광홍보 및 관광객 이동상황 파악관리 관광업체 등록·육성·지도·감독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및 관리 칠갑산천문대 운영관리 관광숙박업·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카지노업, 유원시설 업무 관리
	체육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 진흥 및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추진 엘리트체육·생활체육·장애인체육 육성지원 청양군체육회 및 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공공시설사업소 관리시설 제외) 군민체육대회 개최 및 도민체전 출전 직장복싱팀 운영관리

실·과장	팀	분장사무
문화체육 관광과장	체육팀	7. 스포츠마케팅 추진 8. 학교체육 협력에 관한 사항 9. 체육시설업 신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문화재팀	1. 두릉산성 성역화 사업 (공약사항) 2. 선비충의 문화관 조성 및 운영 3. 모덕사 관리 · 춘추계 제향 4.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관리 및 보수정비 5. 전통사찰 관리 및 보수정비 6. 향토유적 및 충효열시설물 보수정비 및 관리 7.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보존관리 8. 문화재 영향검토 및 현상변경 허가 처리 9. 문화재 발굴 및 지정 10. 전통향교 및 사당 관리 및 지원 11.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 배치사업 및 방화관리 12. 문화재 관련 학술 및 연구 사업 13.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의병에 관한 사항

실·과장	팀	분장사무
환경 보호과장	환경관리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시행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 자연환경보전 및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관리 기후변화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 야생조수보호 및 유해조수포획·수렵면허 업무 야생동식물 보호종 보호 및 밀렵·밀거래 방지대책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배출업소 인·허가, 환경기술인 교육 자연경관영향 검토 및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리 토양오염 실태 조사 및 방지 대책 수질오염 총량관리 및 수질오염원관리 석면피해구제 및 석면안전관리제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관리법 관련 업무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 육성 지원 과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환경지도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지도·단속 종합계획 수립 시행 배출업소 지도·단속 비산먼지·특정공사 신고 및 지도·점검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단속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신고 및 지도·점검 기타 수질오염원 지도·단속 및 환경사범 수사업무 소음·악취 및 실내공기질 관리 운행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단속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환경시설 기술지원 및 자율점검 업소 지정관리 환경오염사고 대책반 편성·운영 미세먼지 저감 사업 및 관리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 점검 가축분뇨관련 영업 인허가 및 지도

실·과장	팀	분장사무
환경 보호과장	청소행정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자원절약 및 재활용 촉진 기본계획 수립 추진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사업장 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 배출자 신고 및 지도·단속 폐기물 처리업, 재활용업소 인·허가 및 지도·단속 쓰레기 종량제 및 일회용품 과대포장 관련업무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추진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련업무 추진 청소업무 및 환경미화원 관리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관한 사항
	상수도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수도사업 기본계획 및 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시행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유수율 제고사업 및 지도·감독 상수도 정수장, 취수장, 배수지 관리 등 시설물장비 관리 급수시설 공사 및 수도 대행 업소 인·허가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 및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체납 관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관리 및 지원사업 추진 상수원보호구역내 행위 인·허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사업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 지하수 이용·개발 허가·신고처리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및 지하수 영향조사기관 인허가 관리 지하수 폐공관리 복구 정수기, 수 처리제 관련업 신고 및 사후관리
	하수도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재이용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유지관리 하수도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고 및 준공검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개인하수처리시설 인·허가 및 설계 시공업 등록 슬러지 업무 총인처리시설 및 에너지자립화 사업 중수도 설치 및 운영 빗물이용시설 관련 업무

실·과장	팀	분 장 사 무
환경 보호과장	환경시설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각시설 설치 및 장비 유지관리 2. 반입쓰레기 소각처리 3. 위생매립장 소각재 및 불연성쓰레기 매립 4. 위생매립장 운영 및 유지관리 5. 반입 음식물쓰레기 위생처리 6. 재활용품 선별시설 유지관리 7.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8.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관리 9. 생활폐기물처리시설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실·과장	팀	분장사무
농촌 공동체과장	공동체기획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체정책 총괄 2. 주민자치·사회혁신 3. 농촌마을만들기 및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4.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공동체활성화 5. 농어촌 공동체 마을지원 사업 6. 과 서무 및 회계 7. 농촌 삶의 질 향상, 농촌마을 공동급식
	푸드플랜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2.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운영 3. 대도시 로컬푸드 직매장 판로개척 4. 로컬푸드 안정성 검사 5. 로컬푸드 기획생산 농가조직 운영, 교육 6. 청양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7. 소규모농민가공센터 운영 및 로컬푸드 농민장터 관리
	공공급식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급식지원 2. 학교급식 특별회계 운영 3. 학교급식 식재료 품목 및 가격결정 운영 4. 식재료 공급·배송 관련 업체 선정 및 관리감독 5. 공공급식지원 및 공공급식센터 운영 6.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시행 7. 공공급식 안전성 검사 지원 8. 친환경로컬푸드 학교급식데이 운영 9. 식생활 개선 교육
	농촌개발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농촌개발사업(마을단위, 중심지) 2.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3. 신활력 공모사업
	농촌활력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험마을, 관광농원, 민박, 도농교류 2. 농산물가공센터(구 부자농촌센터) 운영 3. 6차산업, 장류·김장·향토 가공산업 4. 전통식품육성사업 5. 농산물 가공에 관한 사업 6. BI입주업체 및 창업업체포장재지원 7. 가공품 유통판로개척사업 8. 청양구기자 간기능 개별인정 기능성식품연구 9. 구기자6차산업화 지구조성사업

실·과장	팀	분장사무
농업정책과장	농정기획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발전 중장기 계획수립 농업단체육성, 여성농업인, 후계농업인, 사회적농업 농지 관리, 농업진흥지역 정비, 농업재해 농업법인 관리, 농업발전기금 운영 3농혁신, 균형발전사업, 농업예산 직불제(쌀·밭·조건불리·친환경·FTA), 계절근로자(농촌인력) 과 서무 및 회계 도 농정국 업무 총괄 서무 및 회계 농업통계조사, 농림사업 예산 신청 및 평가 관리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농산물마케팅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추·구기자 축제 개최 농산물 유통시설 육성 및 관리 농·특산물 유통 관리 및 추진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및 직거래 지원 추진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지원 사업 농·특산물 및 품질관리 및 인증사업(농특산물) 농·특산물 브랜드 관리 및 권리화 추진 농수산물 수출 업무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농축유통신문 농산물 산지유통 지원사업 청양농산물 통합마케팅센터 설치 충남오감지원사업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농산물 TV홈쇼핑 지원 농특산물 박람회 참여 지원 구기자 전략브랜드 마케팅 농산물 안전관리 및 원산지 표시 관리 그 밖에 마케팅 업무와 관련된 사항
	친환경농업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료·농약 농기계등 농업자재의 수급조절 친환경농업추진에 관한사항(지구조성, 실천지원, 농자재지원) 병해충 방제사업,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공공비축 매입공매

실·과장	팀	분장사무
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업팀	<p>5. 정부관리양곡 가공지시 및 청산</p> <p>6. 정부양곡창고 도급계약 및 보관관리, 농협정부양곡 수송관리</p> <p>7. 양곡관리특별회계 세입 출납관리</p> <p>8. 양곡가공업 등록 신고처리</p> <p>9. RPC산물벼 매입 및 DSC 사업지원관리 등 운영지도</p> <p>10. 답작, 비료(수도용상토,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농약지원</p> <p>11. 농약판매업, 비료생산업(수입업) 인허가</p> <p>12. 쌀산업육성, 삼광벼 장려금 지원, 농업환경개선 프로그램 지원, 벼 건조보관창고 지원</p> <p>13. 논 타작물 재배지원</p>
	원예특작팀	<p>1. 스마트농업</p> <p>2.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p> <p>3. 지역특화작목 육성 지원</p> <p>4. 협연초 경작 농가 지원</p> <p>5. 원예작물 고품질생산 시범사업</p> <p>6.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p> <p>7. 원예용 생산장비 지원</p> <p>8. 인삼산업기반구축</p> <p>9. 특용작물 인프라 구축</p> <p>10. 고추 특화사업(비가림시설, 농기계, 영농자재 등)</p> <p>11.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p> <p>12. 시설원예 재배환경 개선사업</p> <p>13. 시설원예 양액재배시설 지원</p> <p>14. 시설원예 비가림시설, 이전설치 지원</p> <p>15. 밭작물 가뭄대책 관정 지원</p> <p>16. 원예작물 연작장애 경감지원</p> <p>17.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p> <p>18. 구기자·콩클러스터사업 관리</p> <p>19. 구기자 GAP 농가 육성</p> <p>20. 구기자 생산기반 조성사업</p> <p>21. 약용작물 신소득작목 육성</p> <p>22. 농업재해 일yg 반(원특팀)</p> <p>23. 그 밖에 원예특작 업무와 관련된 사항</p>

실·과장	팀	분장사무
지역 경제과장	지역경제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래시장 활성화 및 시설지원 시장 내 장옥(노점상) 불법관리 및 유통산업일반·소상공인 지원 물가관리·착한가격업소·계량기 관리 및 소비자보호 고춧가루 가공공장 운영 관리 및 풀뿌리기업육성지원 구기자타운·향토상품판매전시장 관리 고추, 구기자 특구관리(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 이관) 담배소매·대부업, 직업소개소 복권 인·허가 관리 등
	일자리 정책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정책 및 노사안정에 관한 업무 고용촉진훈련 및 실업대책 추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취업정도센터 운영 및 일자리공시제 공공근로사업 추진 청년일자리 업무 그 밖에 일자리정책에 관한 사항
	교통행정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추진 운수업체 및 자동차 관련업체 지도단속 여객·화물 운수, 창고업 관리 자가용 자동차 사용신고 및 이륜자동차 관리업무 무단 방치차량 처리 업무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자동차 책임보험 관련 업무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업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주차장특별회계 운영 자동차관리사업(정비, 해체, 매매, 경매장) 업무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 업무 운수업체 재정지원 업무
	에너지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도시가스 관련 인·허가 및 관리 고압가스 관련 인·허가 및 관리 액화석유가스 관련 인·허가 및 관리 석유판매업 관련 등록(변경등록·신고) 및 관리 전기사업(태양광 발전 500kW이하) 인·허가 및 관리 전기·전력 관리 기타 에너지관련 업무

실·과·장	팀	분장사무
건설도시과장	건설행정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과 소관 업무의 종합기획·조정 과 서무 및 회계 건설업(전문건설업)관련 업무 골재채취 등록 및 허가, 변경 관리 국유재산(건설교통부 소관)관리 공유재산관리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사항(면허발급 등) 지하안전업무에 관한 사항 지하안전영향평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설도시과 업무에 관한 사항
	도로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도로 편입용지 보상에 관한 업무 법정 도로의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접도구역 관리 도로 사용 및 굴착에 관한 업무 과적차량 단속 및 교통량 조사 도로 제설자재 관리 및 제설작업 수행 터널 및 교량유지관리 사도개설허가 도로점용허가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보상 업무 노인보호구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하천복구 및 정비사업에 따른 장비지원 법정도로 수해복구에 관한 업무
	농촌기반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원마을조성사업 및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 국·공유재산 관리(농림축산식품부)

실·과장	팀	분장사무
건설 도시과장	도시재생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관리계획 및 군계획시설사업 2. 개발행위 인·허가 3. 도시지역 내 노점상 관련 업무 4. 온천공 관련업무 및 자전거 도로 관리 5. UPIS 및 도시통계 6. 공공디자인 및 경관업무 7.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개발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2. 새마을 시설물 관리 3. 마을쉼터 조성 4.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보수 5.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 6.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 7. 생활민원사업 8.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주택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택종합계획 수립 2. 주택건설 사업승인 관련 업무 및 공동주택 관리 3. 주택개량 융자금 및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 관리 4.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5.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6. 농촌 빈집정비사업 추진 7. 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 추진 8. 주거복지업무관련(주택바우처)업무선정 및 관리 9. 주택건설사업자 관리

실·과장	팀	분장사무
산림축산과장	산림경영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림경영 종합계획수립 및 정책개발 2. 임업단체관리(산림조합, 임업후계자 육성관리, 독립가, 임업관련 단체 등) 3. 임업단체 육성 및 교육 4. 정책숲가꾸기사업 및 고향마을숲가꾸기사업 5. 산지이용 구분 및 정비(보전산지, 임업진흥권역 등) 6.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보호구역내 인·허가) 7. 산지전용 신고 및 허가 8. 토석채취신고 및 허가 9. 수목장림 조성 10. 조림사업 추진 및 사후 관리 11. 산림경영계획인가 12. 무궁화 조성 및 관리 13. 향토숲 조성 14. 국토공원화 업무 추진 15. 가로수 조성 및 관리 16. 산림바이오매스 운영 관리 17. 맞춤형 주민 녹지 환경 조성 사업 18. 과 소관 업무의 종합 기획·조정 및 그 밖에 산림축산과 업무에 관한 사항
	산림보호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불방지 및 종합상황실 운영 2. 임목별채허가(신고수리) 및 임산물굴채취허가 신고 3. 사방사업(사방댐, 산지사방, 계류보전 등) 4. 산림재해 예방·복구(산사태 등) 5. 산림병해충방제 계획 및 실행 6. 산림보호 및 단속 7. 임도시설 및 관리 8. 군유림 관리 9. 목재생산업 등록 및 관리 10. 산지정화, 충무계획수립 11. 임산물 굴취 허가 12. 그 밖의 산림보호 업무와 관련된 사항

실·과장	팀	분장사무
산림 축산과장	산림소득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림사업추진(산림분야) 2. 임산물 생산 및 가공산업 육성 3. 임산물 소득기반 및 재해관리가공산업 육성 4. 임산물 시설지원 및 지도 5. 임산물 유통지원사업 추진 6. 임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 추진 7. 산야초 지원 및 관리 8. 산림통계(산림기본, 임산물 생산) 9. 종묘생산업 등록 및 관리 10. 산촌생태마을 조성 및 관리 11. 수목원, 산림휴양, 생태숲, 도시숲조성 및 관리 12. 등산로 조성 및 정비(도립공원 외) 13. 보호수 관리 14. 그 밖의 산림소득 및 산림휴양 업무에 관한 사항
	축산경영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축산정책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 2. 축산관련 단체 지도 · 관리 3. 농림사업(축산부분) 추진 4. 축산 재해업무 추진 5. 초지조성 허가 및 관리 6. 가축계열화사업 추진 7.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8. 가축인공수정 및 정액처리업무 9. 가축통계조사 업무 10.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 11. 축산 기반지원사업 추진 12. 축산물 브랜드 육성 및 지원 13. 우유수급 및 가격 안정대책 추진 14.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업무 15. 돼지이력제 추진 16. 축산업 허가제 · 등록제 추진 17. 양봉산업 육성 지원 18. 사슴농가 육성 업무 19. 말산업 육성 업무 20. 곤충산업 육성 업무 21. 내수면 어업 인 · 허가 22. 금강 목장화 사업 23. 어도 개보수 사업

실·과장	팀	분장사무
산림 축산과장	가축방역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축방역업무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 2. 구제역, 돼지열병, AI방역 추진 3. 소결핵·브루셀라병 방역 추진 4. 광우병 등 기타 전염병 방역 추진 5. 가축전염병 컨설팅 지원 6. 일제소독의 날 운영 및 점검 7. 가축전염병 예찰 업무 8. 가축방역 약품 구입 및 관리 9. 국가 가축방역사업 10. 방역기반 지원사업 추진 11. 법정 전염병 살처분 및 보상 12. 축산차량등록제 추진 13. 종축업 방역관리 및 점검 14. KAHIS운영(실명제, 예찰 등) 15. 가축전염병 위반 지도단속 및 처분 업무 16. 매몰지 사후관리 17. 동물병원 인·허가 및 공수의 업무 18. 동물용의약품 인·허가 및 관리 업무 19. 유기동물 보호·관리 업무 20. 동물등록제 추진 21. 축산물 위생·안전성 종합대책 추진 22. 축산물 가공·유통업무 추진 23. 축산물 유통 지도단속 및 처분 24. 축산물 판매업 인·허가 관리 25. 축산물 위생교육 및 관리 26. HACCP 지도 및 지원사업 추진 27. 축산물 유통관리 지원사업 추진 28. 가축분뇨처리 시설 지원 29. 축분 공동자원화(바이오가스 연계)사업 지원 30. 축분처리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 31. 축산환경 개선사업 추진

실·과장	팀	분장사무
재무과장	세정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과 소관 업무의 종합기획·조정(서무), 일상경비 집행 지방세 부과 업무 납세자의 권리보호 제도의 운영 지방세 과세적부심사 청구, 이의신청, 재조사 청구처리 지방세 과세자료 전산운영(군↔읍·면 지방세프로그램 운영) 지방세 목표액 산정 및 통계자료 작성 지방세 비과세·감면 운영 지방소득세에 관한 사항 법인 세무조사 그 밖에 재무과 업무에 관한 사항
	회계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입세출의 정리 및 결산 입찰 및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입, 제조) 재정 조기집행에 관한 사항 국·도비(일반, 특별회계) 재배정 수납 및 지출 관급자재 조달 신청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차량 유지관리 실·과, 사업소, 읍·면 일상경비 정산 심사 지출대행점 관리 복식부기 회계 운영
	징수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 징수관리 지방세 체납관리 세외수입 총괄관리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국·도·군 세입금관리 및 결산 자금배정 및 유 휴자금 운용 채권 총괄관리 군 금고 및 수납대행점 관리 기부금품 모집 및 통제 도·군 수입증지 관리

실·과장	팀	분장사무
	과표재산세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및 검증, 공시 2. 종합부동산세 자료 구축 3. 개별주택가격 개별통지 및 이의신청 처리 4. 개별주택가격 심의 및 이의신청 심의회 5. 건축물 시가 조사 6.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관리 7. 개별·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발급 8. 재산세(주택·건축물) 과세 9. 재산세(토지) 과세
재무과장	재산관리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2. 위임관리 도유(일반)재산 관리 3. 군유(일반)재산의 취득·처분 4. 군유(일반)재산의 대부료 부과·징수 5. 공유재산 실태조사 6. 지방재정공제회 관련업무 7. 물품(취득, 처분, 재물조사) 및 정수물품 관리 8. 청사관리 및 소방관리 9. 공공시설물 설치사업에 관한 사항

실·과장	팀	분장사무
행정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 소관 업무의 종합기획·조정 2. 읍·면 행정지도 감독 및 지원 육성 3. 행정구역 경계조정 및 명칭변경 4. 리, 반운영지도, 반상회 5. 인사 및 조직관리 6. 호봉 및 승급관리 7. 비정규직 관리 8. 공무원교육 및 자질향상 9. 선거업무관리 및 국민·주민투표에 관한사항 10. 지역여론동향 11. 일제강점하 사실조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조사 12.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인감관리 13. 민주평통대행 업무 및 각종 소관사회단체, 위원회 관리 14. 그 밖에 행정지원과 업무에 관한 사항
행정 지원과장	서무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 본청의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공무원복무관리 3. 보안, 비상대비 업무 4. 문서수발 통제 5. 공인관리 6. 기록물관리 및 서고·자료관·발간실 운영 7. 공무원공무국외여행 허가 8. 공무원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9.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공제회, 건강보험 관련업무 11. 청사방호 및 직장향토예비군 업무 12. 당직명령 및 운영관리 13.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14. 상훈(군민대상 포함)에 관한사항 15. 각종 의전, 의식행사에 관한 종합 조정

실·과장	팀	분장사무
행정지원과장	평생교육팀	1.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 및 장학지원사업 2. 초·중·고등학교 학습지원 3. 관학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센터 운영 관리 5.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관리 6.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7.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운영지원 8.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9.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교류새마을팀	1. 군민정신 함양운동의 기획추진 2. 도의새마을 운동 및 충남정신운동 지원 업무 3. 새마을운동 지원 업무 4.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업무 5. 적십자 회비모금 및 적십자봉사회 지원업무 6. 자율방범대 지원업무 7. 통계 및 행정지도 8. 분권정책 9. 국내·외, 자치단체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10. 충·효·예 교실 관련 업무 11.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 및 청문
	전산정보팀	1. 정보화추진 계획수립 및 추진 2. 새올행정 및 온나라시스템 운영관리 3. 취약계층 및 주민정보화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4. 정보화마을 운영 관리 5. 홈페이지 운영관리 6. 전산장비,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관리 7.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제도 운영 8.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사항 9. 정보기술아키텍쳐(EA)에 관한 사항 10. 모바일 전자정부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정보화에 관한 사항

[별표 3]

보건의료원 분장사무 (제8조 관련)

실·과장	팀	분 장 사 무
보 건 사업과 장	보건행정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료원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및 소속직원 인사·복무관리 2. 서무 및 기록물 관리, 근무상황·당직·공인관리, 보안업무 3. 예산운영, 회계·계약업무 4. 관용차량 및 각종장비(행정·의료), 물품·행정재산 관리 5. 보건지소 운영 및 관리 6. 보건통계 및 정보시스템(전산) 관리 7.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8.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실시결과 평가·분석 9. 공중보건의사 관리 10.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 11. 그 밖에 보건사업과 업무에 관한 사항
	감염병예방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정 감염병 관리 및 예방업무 2. 생물테러 및 신종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3. 급성감염병 관리 및 집단환자 발생 표본감시 및 역학조사 처리 4. 감염병 환자 격리 및 치료 5. 감염병상황관리(24시간 긴급상황본부 대응) 및 교육·훈련, 홍보에 관한 사항 6.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및 입국자 추적조사 및 관리 7. 소독의무 대상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8. 정기 및 임시, 선택 예방접종 및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관리에 관한 사항 9. 예방접종대상자 전산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노인 인플루엔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한센병에 관한 사항 12. 결핵관리에 관한 사항 13. 성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에 관한 사항 14. 종합방역대책 및 방역소독 업무 15. 소독업 신고수리 및 소독의무대상시설관리 16. 방역약품 기자재 관리 17. 등산로 등 기피제 보관함 및 포충기 관리 18. AI 대응 대책 계획 및 운영 19. 감염병 재난 방역업무

실·과장	팀	분장사무
	의약관리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응급의료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 정신의료기관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4. 의료, 약무, 의료유사업에 관한 사항 5. 화장품, 의료기기 판매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 6.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등의 민원에 관한 사항 7. 의약품 판매업소 의무에 관한 사항 8. 진단용 방사선장치 및 특수의료장비 관리 9. 충무계획 수립 및 중점관리업체 관리 10.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장기기증, 헌혈권장 등에 관한 업무 12.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 13. 마약류취급자 관리에 관한 사항 14.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및 마약관리장의 지정에 관한 사항 15. 진료부 마약 등 특수의약품 관리 16. 건강검진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 17.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18. 의약품 조제, 투약, 복약지도 및 관리 19.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및 지도·감독
보건 사업과장	건강증진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사업 2. 만성질환자 관리 3. 금연클리닉 사업 4.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 5. 실명예방 사업 6. 구강보건 사업 7. 건강홍보관 운영 8. 건강증진센터 운영 9.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10. 가임기 여성 및 산모건강관리 11. 산후조리원에 관한 사항 12. 난임 및 불임부부지원 사업 13.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 14. 미숙아, 선천성대사이상아 검사 등 의료비지원 사업 15.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에 관한 사항 16. 저출산 극복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17.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지원사업 18. 일·가정 균형을 위한 출산친화환경 조성 19. 출산대책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0. 다자녀에 관한 사항

실·과장	팀	분장사무
보건사업과장	정신보건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가진폐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2. 취약지역 무료시술사업 3. 지역사회 간호학 실습지도 관리 4. 국가암검진 사업 5.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및 재가암환자관리 6.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7.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및 재활 운동실 운영 8.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9. 도비보조 건강검진사업(성인병질환, 전립선 암) 10.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11. 재가 정신질환자 등록 및 관리 12. 자살예방사업(생명사랑 행복마을, 멘토링 등) 13.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14.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
	치매안심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치매안심센터 운영 2.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관리 3. 치매 상담 및 등·퇴록 관리 4. 치매 조기검진 사업 5. 치매예방관리 사업 6. 치매환자 쉼터 운영사업 7. 치매가족 지원사업 8. 치매인식개선 및 교육·홍보사업 9.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10. 치매환자 사례관리사업 11. 지역사회 협의체 운영 12. 방문건강관리사업 13. 마을봉사의 날 운영 협조 14. 우리마을주치의제 운영

실·과장	팀	분장사무
	원무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료지원과 업무의 종합 기획·조정 2. 진료지원과 서무 및 회계 3. 요양급여 등 청구에 관한 사항 4. 제증명관리 5. 접수 및 수납관리 6. 의료장비 및 물품, 소모품 관리 7. 건강검진사업(영유아, 학생, 일반, 생애전환기) 8. 진료지원과 통계관리 9. 그 밖에 진료지원과 업무에 관한 사항
진료지원 과장	진료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래진료과 및 병동 기타 지원부서 운영 2.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 3. 의료관련 사건 사고 및 민원처리 4. 진료지원과 감염성 폐기물 관리 5. 국한기온 감시체계 운영 6. 국가 응급진료정보망 운영 7. 수술실 및 내시경실 운영 8. 진료지원과 방사선 안전관리 9. 진료지원과 병리검사 및 외부 수탁검사관리 10. 진료지원과 폐수위탁처리관리

[별표 4]

농업기술센터 분장사무 (제10조제4항 관련)

실·과장	팀	분장사무
기술 지원과장	지원기획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지도사업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계획·평가 농업기술센터 지도기반 조성 및 육성 지역특수시책사업 발굴 및 추진 소내 서무, 문서, 인사, 예산 및 회계, 관인관리, 법령제도 조정 지도공무원 전문화 및 특기별 지도인력 관리 청양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청사 시설물(다목적농업인회관 관리) 유지관리 공용차량 운영 및 관리 농업기술 홍보에 관한 사항 농업기계 순회수리 농업기계 관리 및 교육 농기계 공급, 농기계임대사업 및 정비 농업기계 관련 행정업무 추진 과 소관 업무의 종합 기획·조정 및 그 밖에 기술지원과 업무에 관한 사항
	미래역량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4-H 조직 육성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관리 농촌지도자 육성지도 품목별 연구회 육성지도 미래농업인 역량개발 교육 훈련 농업인대학 운영 및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농림수산사업 안내 및 처리 농업인정보화교육 그 밖에 미래 역량 팀에 속하는 사항
	생활자원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생활자원사업의 계획 및 평가 농촌생활자원의 융복합 수익모델 육성 농산물 가공상품개발이용 및 농외소득활동 지원 향토음식명품화 및 식문화 계승발전 농작업안전생활화 및 생활기술과제교육 농촌여성조직(생활개선회) 및 과제연구회 육성 농촌체험농가 및 농촌교육농장 육성 농촌전통자원 발굴 및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그 밖에 생활자원분야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실·과장	팀	분장사무
기술 지원과장	귀농귀촌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귀농지원 중장단기 계획 수립, 평가, 발전방향 설정 귀농 귀촌 상담 청양군 귀농귀촌인 협의회 육성 귀농인의 집 조성 및 운영 귀농위원회 운영 그 밖에 귀농귀촌과 관련된 사항
	서부지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방민원 및 전화상담 벼농사, 원예, 축산, 특작 등 현장순회 기술지도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추진 및 각종현장 기술지도 영농관련동향 여론수렴, 현장애로기술 상담 학습단체 육성사업 지원 지역특화작목 개발보급 그 밖에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사항
	동부지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방민원 및 전화상담 벼농사, 원예, 축산, 특작 등 현장순회 기술지도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추진 및 각종현장 기술지도 영농관련동향 여론수렴, 현장애로기술 상담 학습단체 육성사업 지원 지역특화작목 개발보급 유용미생물 활용 및 보급 농기계 임대사업추진 및 활용지도 그 밖에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사항
기술 보급과장	작물환경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량작물 기술지도 기상재해에 관한 지도 식량작물 우량품종 보급 및 시범사업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기술 지도 농약사용법 지도 토양검정·개량 및 토양비료 시비개선 지도 환경농업 지도 과 소관 업무의 종합 기획·조정 및 그 밖에 기술보급과 업무에 관한 사항

실·과장	팀	분장사무
기술보급과장	소득작물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원예 재배기술 지도 2. 노지채소 재배기술지도 3. 소득작물 시범사업 및 주산단지 지도 4. 과수재배기술지도 5. 가축사양관리 및 기술지도 6. 친환경 축산 관리실 운영 7. 특수가축 사육기술지도 8. 수출농업 육성지도 9. 그 밖에 소득작물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특화기술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야초 재배기술 지도 및 가공상품 연구 2. 지역특화 작목에 대한 연구개발 3. 대체작목 및 틈새작목 개발보급 4. 특용 및 약용작물 기술지도 5. 양잠 및 버섯재배기술지도 6. 고추 및 화훼기술지도 7. 농가 경영조사 분석 8.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9. 유통정보조사 및 전산입력홈페이지 전자상거래 지도 10. 그 밖에 특화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과학영농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목적 육묘장 운영 2. 새기술 실습 시범포 운영 3. 유용미생물 생산 및 지원 4. 그밖에 과학영농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별표 6]

사업소 분장사무 (제12조 관련)

사업소장	팀	분장사무
공공시설 사업소장	경영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사업소내 소속직원의 인사·복무관리서무, 기록물관리 및 근무상황, 당직, 공인 관리, 보안업무예산운영, 회계, 계약업무관용차량 및 장비, 물품, 행정재산 관리고추문화마을, 칠갑산자연휴양림,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 칠갑산휴양랜드, 칠갑산오토캠핑장 시설 운영 관리시설물의 이용 및 재정수입 증대방안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입장료 징수사업소 소관업무의 종합 기획·조정 및 그 밖에 공공시설사업소 업무에 관한 사항
	시설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군민체육관, 문화체육센터, 공설운동장, 국궁장, 테니스장, 국민 체육센터, 다목적 실내체육관 시설운영 관리천장호·장곡지구 관리사업소 소관 시설물의 보수, 유지관리, 운영에 관한사항그밖에 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

[별표 9]

읍·면장 분장사무

(제15조 관련)

읍·면장	팀	분 장 사 무
청양읍장	총무팀	1. 읍 행정의 총괄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일반 서무, 보직인사, 보안, 공인, 기록물관리 3. 리 행정의 지도·감독 4. 선거, 국민투표에 관한 업무 5. 통계, 공보, 체육에 관한 업무 6. 기부금품 통제 7. 예산 및 회계·경리 업무, 계약, 물품관리, 차량관리 8. 지역 여론동향 관리 보고 및 집단민원 관리 9. 학령아동 관리에 관한 업무 10. 행정정보공개 11. 청사 방호 및 청사유지관리 12. 도의새마을운동 및 도의교육 추진 13. 새마을가꾸기 사업 및 시설물 관리 14. 소방 및 민방위에 관한사항 15. 안전업무 총괄 및 인적·사회적재난 관리 16. 그 밖에 읍 사무에 관한 사항과 다른 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재무팀	1.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징수 2. 국·공유재산 관리 3. 제증명 발급(납세증명, 과세증명) 4. 세원 발굴 및 조사 5. 과세기초자료 정비 6. 지방세 변동자료관리 및 고지서 송달 7. 도로 점·사용료 부과 징수 8. 그 밖에 재무행정에 관한 사항
	주민복지팀	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조사 및 보호 2. 국가유공자 등 조사 관리 3. 장례 및 묘지 관련 업무 4. 여성, 청소년육성에 관한 사항 5.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 복지, 경로당 관리 6.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사항 7. 청소, 위생, 환경, 보건업무 8. 환경미화원 관리 9. 서비스연계 업무 10. 이재민대책 11. 그 밖에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읍·면장	팀	분 장 사 무
청양읍장	맞춤형복지팀 (청양, 운곡)	1. 복지사각지대 발굴 2. 찾아가는 복지상담 3. 통합사례관리 4. 자원관리(지역자원 발굴) 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산업팀	1. 농정일반 2. 농지업무에 관한 사항 3. 친환경 농업 추진 4. 객토 및 토양개량 5. 농산물 간이집하장 관리 6. 영농관리 및 농기계 관리·영농기계화 추진 7. 농산물 유통 관리 8. 수산, 산림, 양정, 축산 9. 상업, 공업, 전기, 연료, 운수 10. 공공근로사업 및 실업대책에 관한 업무 11. 가축방역 및 양축농가 지도 12. 산불예방 및 진화 13. 임산물 생산량 조사 14. 시장 정비 15. 노상방치 차량 조사 16. 보급종 종자신청 17. 상토지원사업 18. 논직불제 추진 19. 쌀생산 조정제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산업행정에 관한 사항
	민원팀	1.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2. 제증명 발급 등 민원처리 3. 전입 및 국외이주 신고처리 4. 수형인 명표 관리 5. 확정일자 증명 6.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업무 7. 범죄자 및 파산자의 대상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민원실 운영 및 민원행정에 관한 사항

읍·면장	팀	분 장 사 무
청양읍장	건설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2. 경지정리 환지청산금 정산 3.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공사관리 4. 하천 유지관리 5. 도로 및 교량 조사 관리 6. 재해 재난관리 7. 한해 대책 사무 8. 건축업무 9. 가로등 조사 관리 10. 도로점용 사용허가 11. 농촌불량주택 및 빈집현황조사 12. 국토공원화사업 추진(꽃길, 꽃동산 조성관리) 13. 그 밖에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
정산면장	총무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면 행정의 총괄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일반 서무, 보직인사, 보안, 공인, 기록물관리 3. 리 행정의 지도·감독 4. 선거, 국민투표에 관한 업무 5. 통계, 공보, 체육에 관한 업무 6. 기부금품 모집 통제 7. 예산 및 회계·경리 업무, 계약, 물품관리, 차량관리 8. 지역 여론동향 관리 보고 및 집단민원 관리 9. 행정정보공개 10. 청사 방호 및 청사유지관리 11. 도의새마을운동 및 도의교육 추진 12. 새마을가꾸기 사업 및 시설물 관리 13. 국토공원화사업 추진(꽃길, 꽃동산 조성관리) 14. 면 특수시책 추진 15. 소방 및 의용소방대 지원 16.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징수 17. 국·공유재산 관리 18. 제증명 발급(납세증명, 과세증명) 19. 세원 발굴 및 조사 20. 과세기초자료 정비 21. 지방세 변동자료관리 및 고지서 송달

읍·면장	팀	분장사무
정산면장	총무팀	1. 면 행정의 총괄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일반 서무, 보직인사, 보안, 공인, 기록물관리 3. 리 행정의 지도·감독 4. 선거, 국민투표에 관한 업무 5. 통계, 공보, 체육에 관한 업무 6. 기부금품 모집 통제 7. 예산 및 회계·경리 업무, 계약, 물품관리, 차량관리 8. 지역 여론동향 관리 보고 및 집단민원 관리 9. 행정정보공개 10. 청사 방호 및 청사유지관리 11. 도의새마을운동 및 도의교육 추진 12. 새마을가꾸기 사업 및 시설물 관리 13. 국토공원화사업 추진(꽃길, 꽃동산 조성관리) 14. 면 특수시책 추진 15. 소방 및 의용소방대 지원 16.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징수 17. 국·공유재산 관리 18. 제증명 발급(납세증명, 과세증명) 19. 세원 발굴 및 조사 20. 과세기초자료 정비 21. 지방세 변동자료관리 및 고지서 송달 22.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23.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공사관리 24. 하천 유지관리 25. 도로 및 교량 조사 관리 26. 건축업무 27. 재난 및 재해대책 28. 도로 점·사용료 부과 징수 29. 도로 점·사용 허가 30. 그 밖에 면 사무에 관한 사항과 다른 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맞춤형복지팀 (정산, 목, 청남)	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조사 및 보호 2. 국가유공자등 조사 관리 3. 장례 및 묘지 관련 업무 4. 여성,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항 5.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 복지, 경로당 관리 6.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사항 7. 청소, 위생, 환경, 보건업무 8. 환경미화원 관리 9. 서비스연계 업무 10. 이재민 대책 11. 가로등 조사관리 12. 통합사례관리, 사각지대발굴 및 찾아가는 복지상담 13. 그 밖에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읍·면장	팀	분 장 사 무
정산면장	산업팀	1. 농정일반 2. 농지업무에 관한 사항 3. 친환경 농업 추진 4. 객토 및 토양개량 5. 농산물 간이집하장 관리 6. 영농관리 및 농기계 관리 · 영농기계화 추진 7. 농산물 유통 관리 8. 수산, 산림, 양정, 축산 9. 상업, 공업, 전기, 연료, 운수 10. 공공근로사업 및 실업대책에 관한 업무 11. 가축방역 및 양축농가 지도 12. 산불예방 및 진화 13. 임산물 생산량 조사 14. 이륜자동차등록 및 사용신고 처리 15. 시장 정비 16. 노상방치차량 조사 17. 보급종 종자신청 18. 상토지원사업 19. 논 직불제 추진 20. 쌀 생산 조정제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산업행정에 관한 사항
	민원팀	1.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2. 제증명 발급 등 민원처리 3. 전입 및 국외이주 신고처리 4. 수형인 명표 관리 5. 확정일자 증명 6.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업무 7. 범죄자 및 파산자의 대상에 관한 업무 8. 민방위에 관한 사항 9. 인력동원 업무 10. 비상대비 관련업무 11. 학령아동 관리에 관한 업무 12. 그 밖에 민원실 운영 및 민원행정에 관한 사항

읍·면장	팀	분 장 사 무
남양면장	총무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면 행정의 총괄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일반 서무, 보직인사, 보안, 공인, 기록물관리 3. 리 행정의 지도·감독 4. 선거, 국민투표에 관한 업무 5. 통계, 공보, 체육에 관한 업무 6. 기부금품 모집 통제 7. 예산 및 회계·경리 업무, 계약, 물품관리, 차량관리 8. 지역 여론동향 관리 보고 및 집단민원 관리 9. 행정정보 공개 10. 청사 방호 및 청사 유지관리 11. 도의새마을운동 및 도의교육 추진 12. 새마을가꾸기 사업 및 시설물 관리 13. 국토공원화사업 추진(꽃길, 꽃동산 조성관리) 14. 면 특수시책 추진 15. 소방 및 의용소방대 지원 16.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17. 국·공유 재산관리 18. 제증명 발급(납세증명, 과세증명) 19. 세원발굴 및 조사 20. 과세기초자료 정비 21. 지방세 변동자료관리 및 고지서 송달 22.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23.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공사관리 24. 하천 유지관리 25. 도로 및 교량 조사 관리 26. 건축업무 27. 재난 및 재해대책 28. 도로 점·사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29. 공공근로사업 및 실업대책에 관한 업무 30. 그 밖에 면 사무에 관한 사항과 다른 담당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맞춤형복지팀 (남양,장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조사 및 보호 2. 국가유공자등 조사 관리 3. 장례 및 묘지 관련 업무 4. 여성,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항 5.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 복지, 경로당 관리 6.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사항 7. 청소, 위생, 환경, 보건업무 8. 환경미화원 관리 9. 서비스연계 업무

읍·면장	팀	분 장 사 무
	맞춤형복지팀 (남양, 장평)	10. 이재민 대책 11. 가로등 조사관리 12. 통합사례관리, 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가는 복지상담 13. 그 밖에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남양면장	산업팀	1. 농정일반 2. 농지업무에 관한 사항 3. 친환경 농업 추진 4. 객토 및 토양개량 5. 농산물 간이집하장 관리 6. 영농관리 및 농기계 관리 · 영농기계화 추진 7. 농산물 유통 관리 8. 수산, 산림, 양정, 축산 9. 상업, 공업, 전기, 연료, 운수 10. 가축방역 및 양축농가 지도 11. 산불예방 및 진화 12. 임산물 생산량 조사 13. 시장 정비 14. 노상방치차량 조사 15. 보급종 종자신청 16. 상토지원사업 17. 쌀소득등보전직적직불제 추진 18. 그 밖에 산업행정에 관한 사항
	민원팀	1.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2. 제증명 발급 등 민원처리 3. 전입 및 국외이주 신고처리 4. 수형인 명표 관리 5. 확정일자 증명 6.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업무 7. 범죄자 및 파산자의 대상에 관한 업무 8. 민방위에 관한 사항 9. 인력동원 업무 10. 비상대비 관련업무 11. 학령아동 관리에 관한 업무 12. 이륜자동차등록 및 사용신고 처리 13.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민원실 운영 및 민원행정에 관한 사항

읍·면장	팀	분장사무
화성면장	총무팀	1. 면 행정의 총괄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일반 서무, 보직인사, 보안, 공인, 기록물관리 3. 리 행정의 지도·감독 4. 선거, 국민투표에 관한 업무 5. 통계, 공보, 체육에 관한 업무 6. 기부금품 모집 통제 7. 예산 및 회계·경리 업무, 계약, 물품관리, 차량관리 8. 지역 여론동향 관리 보고 및 집단민원 관리 9. 행정정보 공개 10. 청사 방호 및 청사 유지관리 11. 도의새마을운동 및 도의교육 추진 12. 새마을가꾸기 사업 및 시설물 관리 13. 국토공원화사업 추진(꽃길, 꽃동산 조성관리) 14. 면 특수시책 추진 15. 소방 및 의용소방대 지원 16.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 징수 17. 국·공유 재산관리 18. 제증명 발급(납세증명, 과세증명) 19. 세원발굴 및 조사 20. 과세기초자료 정비 21. 지방세 변동자료관리 및 고지서 송달 22.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23.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공사관리 24. 하천 유지관리 25. 도로 및 교량 조사 관리 26. 건축업무 27. 재난 및 재해대책 28. 도로 점·사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 징수 29. 공공근로사업 및 실업대책에 관한 업무 30. 그 밖에 면 사무에 관한 사항과 다른 담당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맞춤형복지팀 (화성, 비봉, 운곡)	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조사 및 보호 2. 국가유공자등 조사 관리 3. 장례 및 묘지 관련 업무 4. 여성,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항 5.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 복지, 경로당 관리 6.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사항 7. 청소, 위생, 환경, 보건업무

읍·면장	팀	분 장 사 무
화성면장	맞춤형복지팀 (화성,비봉,운곡)	8. 환경미화원 관리 9. 서비스연계 업무 10. 이재민 대책 11. 가로등 조사관리 12. 통합사례관리, 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가는 복지상담 13. 그 밖에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산업팀	1. 농정일반 2. 농지업무에 관한 사항 3. 친환경 농업 추진 4. 객토 및 토양개량 5. 농산물 간이집하장 관리 6. 영농관리 및 농기계 관리 · 영농기계화 추진 7. 농산물 유통 관리 8. 수산, 산림, 양정, 축산 9. 상업, 공업, 전기, 연료, 운수 10. 가축방역 및 양축농가 지도 11. 산불예방 및 진화 12. 임산물 생산량 조사 13. 시장 정비 14. 노상방치차량 조사 15. 보급종 종자신청 16. 상토지원사업 17. 쌀소득등보전직적직불제 추진 18. 그 밖에 산업행정에 관한 사항
	민원팀	1.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2. 제증명 발급 등 민원처리 3. 전입 및 국외이주 신고처리 4. 수령인 명표 관리 5. 확정일자 증명 6.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업무 7. 범죄자 및 파산자의 대상에 관한 업무 8. 민방위에 관한 사항 9. 인력동원 업무 10. 비상대비 관련업무 11. 학령아동 관리에 관한 업무 12. 이륜자동차등록 및 사용신고 처리 13.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민원실 운영 및 민원행정에 관한 사항

읍·면장	팀	분 장 사 무
운곡면장 대치면장 목 면 장 청남면장 장평면장 비봉면장	총무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면 행정의 총괄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일반 서무, 보직인사, 보안, 공인, 기록물관리 3. 리 행정의 지도·감독 4. 선거, 국민투표에 관한 업무 5. 통계, 공보, 체육에 관한 업무 6. 기부금품 모집 통제 7. 예산 및 회계 · 경리 업무, 계약, 물품관리, 차량관리 8. 지역 여론동향 관리 보고 및 집단민원 관리 9. 행정정보 공개 10. 청사 방호 및 청사 유지관리 11. 도의새마을운동 및 도의교육 추진 12. 새마을가꾸기 사업 및 시설물 관리 13. 국토공원화사업 추진(꽃길, 꽃동산 조성관리) 14. 면 특수시책 추진 15. 소방 및 의용소방대 지원 16.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 징수 17. 국 · 공유 재산관리 18. 제증명 발급(납세증명, 과세증명) 19. 세원발굴 및 조사 20. 과세기초자료 정비 21. 지방세 변동자료관리 및 고지서 송달 22.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23.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공사관리 24. 하천 유지관리 25. 도로 및 교량 조사 관리 26. 건축업무 27. 재난 및 재해대책 28. 도로 점·사용료 부과 징수 29. 도로 점 · 사용 허가 30. 공공근로사업 및 실업대책에 관한 업무 31. 그 밖에 면 사무에 관한 사항과 다른 담당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주민복지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조사 및 보호 2. 국가유공자등 조사 관리 3. 장례 및 묘지 관련 업무 4. 여성,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항 5.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 복지, 경로당 관리 6.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사항 7. 청소, 위생, 환경, 보건업무

읍·면장	팀	분 장 사 무
운곡면장 대치면장 목 면 장 청남면장 장평면장 비봉면장	주민복지팀	8. 환경미화원 관리 9. 서비스연계 업무 10. 이재민 대책 11. 가로등 조사관리 12. 사례관리관련 지원 13. 그 밖에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1. 농정일반 2. 농지업무에 관한 사항 3. 친환경 농업 추진 4. 객토 및 토양개량 5. 농산물 간이집하장 관리 6. 영농관리 및 농기계 관리 · 영농기계화 추진 7. 농산물 유통 관리 8. 수산, 산림, 양정, 축산 9. 상업, 공업, 전기, 연료, 운수 10. 가축방역 및 양축농가 지도 11. 산불예방 및 진화 12. 임산물 생산량 조사 13. 시장 정비 14. 노상방치차량 조사 15. 보급종 종자신청 16. 상토지원사업 17. 쌀소득등보전직적직불제 추진 18. 그 밖에 산업행정에 관한 사항
	산업팀	1.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2. 제증명 발급 등 민원처리 3. 전입 및 국외이주 신고처리 4. 수형인 명표 관리 5. 확정일자 증명 6.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업무 7. 범죄자 및 파산자의 대상에 관한 업무 8. 민방위에 관한 사항 9. 인력동원 업무 10. 비상대비 관련업무 11. 학령아동 관리에 관한 업무 12. 이륜자동차등록 및 사용신고 처리 13.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민원실 운영 및 민원행정에 관한 사항
		1.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2. 제증명 발급 등 민원처리 3. 전입 및 국외이주 신고처리 4. 수형인 명표 관리 5. 확정일자 증명 6.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업무 7. 범죄자 및 파산자의 대상에 관한 업무 8. 민방위에 관한 사항 9. 인력동원 업무 10. 비상대비 관련업무 11. 학령아동 관리에 관한 업무 12. 이륜자동차등록 및 사용신고 처리 13.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민원실 운영 및 민원행정에 관한 사항
	민원팀	1.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2. 제증명 발급 등 민원처리 3. 전입 및 국외이주 신고처리 4. 수형인 명표 관리 5. 확정일자 증명 6.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업무 7. 범죄자 및 파산자의 대상에 관한 업무 8. 민방위에 관한 사항 9. 인력동원 업무 10. 비상대비 관련업무 11. 학령아동 관리에 관한 업무 12. 이륜자동차등록 및 사용신고 처리 13.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민원실 운영 및 민원행정에 관한 사항
		1.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2. 제증명 발급 등 민원처리 3. 전입 및 국외이주 신고처리 4. 수형인 명표 관리 5. 확정일자 증명 6.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업무 7. 범죄자 및 파산자의 대상에 관한 업무 8. 민방위에 관한 사항 9. 인력동원 업무 10. 비상대비 관련업무 11. 학령아동 관리에 관한 업무 12. 이륜자동차등록 및 사용신고 처리 13.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민원실 운영 및 민원행정에 관한 사항

[별표 11]

청양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제16조제2항 관련)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계	본 청			직무분야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문화체육 관광과	
총 계	5	2	1	2	
6급 소계	1	1			
지방행정주사	1	1			법령검토 및 소송업무
7급 소계	1	1			
지방행정주사보	1	1			정책홍보
8급 소계	2			2	
지방행정서기	2			2	전문대 운영
9급 소계	1		1		
지방시설서기보	1		1		지적분야

[별표 12]

청양군 개방형직위 지방임기제공무원 (제16조제3항 관련)

부서별 직급·직렬	총계	미래전략과	보건의료원	비고
총 계	3	2	1	
지방기술서기관	1		1	보건의료원장
지방시설주사	1	1		특화관광
지방행정주사	1	1		기업산단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8년 12월 15일

청양군 규칙 제1223호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 군**”을 “**지방자치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군수**”를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주최 · 주관자**”를
“**주최자 · 주관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관람권 및 예매권은 사전에**”를 “**관람권은 미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시하여야**”를 “**분명하게 밝혀야**”로 하며, 같
은 항 제3호 중 “**군인(하사 이하 정복착용)**”을 “**군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
항 중 “**초과할**”을 “**넘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비치하고”를 “갖춰 두고”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포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8년 12월 15일

청양군 규칙 제1224호

청양군포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청양군포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양군포상조례시행규칙**”을 “**청양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청양군포상조례 제14조**”를 “**「청양군 포상 조례」 제14조**”로, “**관하여 필 요**”를 “**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조례 제10조의2**”를 “**「청양군 포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제10조의2**”로 한다.

제4조 제목 “**(퇴직공무원표창)**”을 “**(퇴직공무원 표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에게**”를 “**에게 표창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내·외조**”를 “**내조·외조**”로 한다.

제5조 중 “**(별지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8년 12월 15일

청양군 규칙 제1225호

청양군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청양군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양군직무대리규칙**”을 “**청양군 직무대리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책임**”을 “**그 책임**”으로,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를 “**직무대리**”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를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를 “**보조기관의 장이 결원·출장·기타**”로, “**각호**”를 “**각 호**”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실·과장**”을 “**실장·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실장·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제2조제4호 중 “**그직무**”를 “**그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읍면장**”을 “**읍장·면장**”으로, “**팀장직제상 팀장순위에 의한 팀장주사가**”를 “**팀장 직제상 순위에 의한 팀장이**”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아니할**”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과장이 실과원**”을 “**실장·과장이 소속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문서**”를 “**문서(별지 서식)**”로 한다.

제4조 중 “**상당하는**”을 “**상응하는**”으로 한다.

부 칙

o]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8년 12월 15일

청양군 규칙 제1226호

청양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

청양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양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을 “청양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지방공무원”으로, “규정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사무처리의 능률화를 도모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 제목 “(근무상황 카드의 비치)”를 “(근무상황 등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양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개인별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과가 1개 이상 있는 직속기관·사업소의 경우에는 과별로 관리할 수 있다.

제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전보·파견·파견복귀·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보내야 한다.

제3조 제목 “(근무상황 카드의 서명날인)”을 “(근무상황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미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았을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미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중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8조**”를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로, “연가기간”을 “연가일수”로 한다.

제6조 제목 “**(출장명령)**”을 “**(출장의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이 「**공무원 예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미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자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지 제4호서식의 관내 출장 근무상황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퇴근시간전**”을 “**퇴근시간 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근무시간중에**”를 “**근무시간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서식)는 각 실·과별로 갖춰 두되 4급 이상의 휴가신청 근무지 내 출장 및 근무시간 중의 외출을 각각 구분하여 합침 관리한다.
제7조2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군수는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 중 “**이내에**”를 “**이내**”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근무상환카드를 [별지 제1호서식] 근무상황카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8년 12월 15일

청양군 규칙 제1227호

청양군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개정규칙

청양군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양군사무인계인수규칙**”을 “**청양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7조**”를 “**「지방자치법」 제106조**”로, “**제30조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를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양군**”으로, “**사무인계인수**”를 “**사무인계인수**”로,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자가 퇴직**”을 “**각 호의 사람이 퇴직**,”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양군수(이하“군수”라한다)

2.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팀장 이
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제2조제1항제3호 중 “팀장주사”를 “팀장”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
호 중 “군 재무회계규칙에”를 “「청양군 재무회계 규칙」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실·과장”을 “실장·과장”으로, “업무성질상”을 “업무성질 상”으로, “명확히 할”을
“명확히 할”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이”를 “규칙에서”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자는”을 “자에게는”으로, “이내에”를 “이내”로 하고, 같은 항 단
서 중 “기일내에”를 “기일 내”로, “첨부하여”를 “붙여”로, “직장감독자”를 “바로 위의
감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다른 특별”을 “특별”로, “자에게 인계”를 “사람에
게 인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상·하급자”를 “상급자·하급자”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날인하여야”를 “도장을 찍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
하급자”를 “상급자·하급자”로, “작성 날인하여야”를 “작성하여 도장을 찍어야”로 하
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명시하고”를 “분명하게 밝히고”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를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
로 한다.

제5조 중 “소지하고”를 “가지고”로 한다.

제6조 중 “이내에”를 “이내”로,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를 “붙여 직근 상급감
독기관에게”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과장”을 “실장·과장”으로, “과단위”를 “과 단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항복중**”을 “**항복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날인하여야**”를 “**도장**을 **찍어야**”로, “**실 · 과장**”을 “**실장 · 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날인하여야**”를 “**도장을 찍어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사유없**”을 “**사유 없**”으로,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를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를 “**분명하게 밝혀 바로 위의 상급감독기관에게**”로 한다.

제10조 제목 “**(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를 “**(기구의 폐지 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련업무**”를 “**관련 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군내에 있어서**”를 “**청양군 내**”로, “**담당실 ·**”를 “**담당 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규칙이**”를 “**규칙에서**”로, “**적정**”을 “**적절**”로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출장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중 “**읍면동**”을 “**읍·면**”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8년 12월 15일

청양군 규칙 제1228호

청양군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청양군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양군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을 “**청양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청양군포상조례 제4조**”를 “**「청양군 포상 조례」 제4조**”로, “**모범 공무원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을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실장·과장, 직속기관
장, 사업소장, 읍장·면장이 추천한다.

제2조제2항 중 “**참작**”을 “**고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군 포상조**

례”를 “「청양군 포상 조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6971호)”을 “「모범공무원 규정」”으로 한다.

제3조 중 “군인사 위원회의”를 “「청양군 포상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특례를 부여할”을 “혜택을 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내에”를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은 청양군 본청의 결원 시 우선 전입

제5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8조제1항”을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부한다”를 “발급한다”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관할 도”를 “충청남도”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8년 12월 15일

청양군 규칙 제1229호

청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청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규칙”을 “청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청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청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제목 “(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를 “(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청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를 “청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로, “협의회조례”를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협의회조례”를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제3항 중 “협의회조례”를 “조례”로, “반려하고자”를 “되돌려 보내고자”로, “구체적으로 적시하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로, “통보하여야”를 “알려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유없”을 “사유 없”으로 한다.

제4조 중 “협의회조례”를 “조례”로,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비치하여”를 “갖춰 두어”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각종위원회여성위원회에관한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8년 12월 15일

청양군 훈령 제301호

청양군각종위원회여성위원회에관한규정 폐지규정

청양군각종위원회여성위원회에관한규정은 폐지 한다.

부 칙

o)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방화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8년 12월 15일

청양군 훈령 제302호

청양군방화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청양군방화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양군방화관리규정”을 “청양군 방화관리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청양군청”을 “청양군”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을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각호에 정한 자”를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

산관리담당”을 “재산관리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읍면”을 “읍 ·

면”으로, “읍면은 읍면장”을 “읍 · 면은 읍장 · 면장”으로, “주무부서 담당”을

“주무팀장”으로, “사무담당자”를 “주무팀장”으로, “읍면은 부읍 · 면장”을

“읍 · 면은 부읍장 · 부면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호”로 한다.

제3조 제목 “(화기단속 책임자와 그 임무등)”을 “(화기단속 책임자와 그 임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두어 상시 방화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방화관리 책임자와 연대책임을 진다”를 “둔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화기단속 책임자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하고 부책임자는 부서의 주무팀장으로 한다.

제3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3항의 화기단속 책임자와 부책임자는 별표 1과 같이 출입문 전면 우측 상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항”을 “하며 「지방공무원법」 제69조”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화기단속 순찰) 화기단속 책임자는 소속 직원 중에서 화기단속 순찰 책임 직원 각 1명을 지정하고 매일 출근시간 10분전 이내 1회, 퇴근시간 경과 후 20분 이내 1회씩 각각 책임구역을 순찰하도록 하고 화기 안전여부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중 “년1회 이상 관내 소방서”를 “연 1회 이상 청양경찰서장과 청양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으로, “소화작업연습, 소방차의 출동과 연결 작업 연습 등”을 “소화작업 연습 등”으로 한다.

제6조 중 “전기소화”를 “전기”로, “안전도 유사시 사용 가능성 여부”를 “안전

도,”로, “**측량 등을 내용으로 소방서, 한국전력공사 출장소**”를 “등을 내용으로 소방서장, 한국전기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관할 소방서**”를 “**소방서장**”으로, “**9월중에**”를 “**9월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제3호**”를 “**별표 제2호**”로 한다.

제8조 중 “**별표 제2호**”를 “**대하여 별표 제3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근무중**”을 “**근무 중**”으로, “**동일한**”을 “**같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무중**”을 “**근무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실 · 과장에**”를 “**부서장에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아니하고는**”을 “**않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난방기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설치허가 신청서를 방화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3항 중 “**비치**”를 “**준비**”로 한다.

제12조 제목 “**(근무시간중 화재발생시 비상조치 등)**”을 “**(근무시간 중 화재발생시 비상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재발생 경보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처음발견 한**”을 “**처음 발견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화관리책임자는 별표 제8호**”를 “**방화관리책임자(행정지원과장)는 별표 제4호**”로, “**화재발생시**”를 “**화재발생 시**”로, “**부착하고**”를

“갖춰 두고”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재발생시”를 “화재발생 시”로, “읍면별”을 “읍 · 면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서무담당자”를 “주무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읍 · 면장으로”를 “읍장 · 면장으로”로, “부읍 · 면장”을 “부읍장 · 부면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화작업에 임하여야”를 “소화활동에 참여해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화재발생시 중요문서와 물품의 제1차 안전 지출장소는 청양군청 광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화기단속 책임자”를 “화기단속책임자”로, “중요문서의 물품보관 “캐비넷””을 “중요문서와 물품보관 캐비넷”으로, “별표 제10호 규격과 같이 적색으로 지출 우선”을 “적색으로 지출우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우선순위 제1번 “캐비넷” 서랍”을 “지출 우선순위 제1번 캐비넷 서랍”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 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제8호 및 별표 제9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화기단속 책임자 및 부책임자

화 기 단 속 책 임 자			
정	직위	성 명	
	직		
부	직위	성 명	
	직		

25cm

[별표 2]

착 안 표

제 목	착 안 사 항
1. 소화기구	1. 성능 유무효 여부 2. 정비상태 양호 여부 3. 정상위치 비치 여부 4. 비치수 적정 여부
2. 방화시설	1. 방화수, 방화사 비치 여부 2. 삽, 갈쿠리, 바케스 비치 여부 3. 유사시 활용가능성 여부
3. 난방시설	1. 난로 및 전열기 설치에 대한 언정성 여부 2. 난방시설 허가 여부 3. 관리 책임자의 관리 상태 4. 유류 취급상태
4. 재설이	1. 재설이 관리 상황 2. 담배꽁초 처리 상황
5. 마루바닥 및 기타사항	1. 청사내에 화기 위험개소 유무 여부 2. 유류저장고의 유류취급 상태 3. 숙직실, 구내매점, 등사실등 화재위험시설 화기 취급 안전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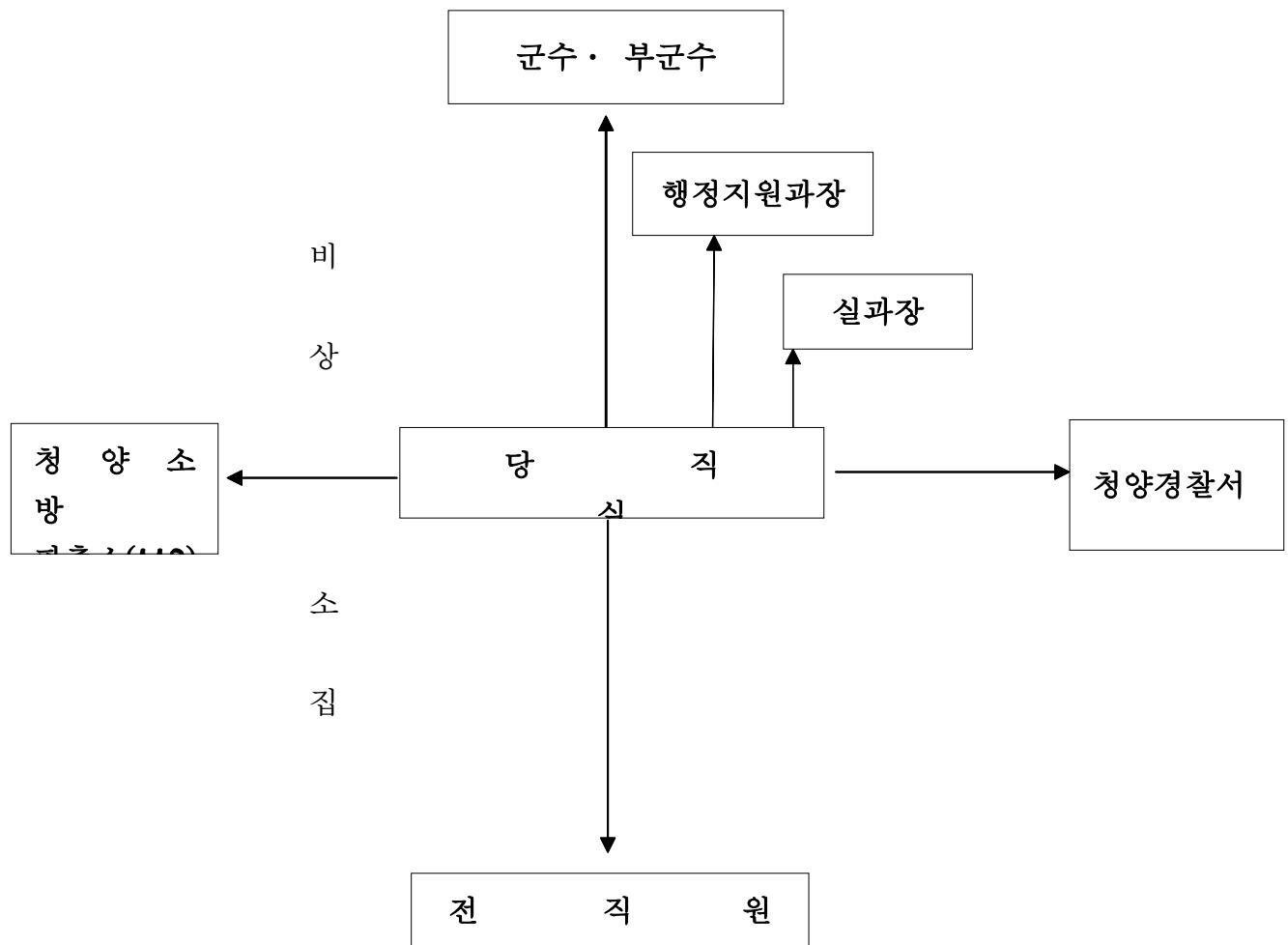
[별표 3]

소화 및 방화기구 설치기준

구 분	설 비 기 준	비 고
1. 각 사무실(창고 기타 부속시설)	CO ₂ 또는 포말소화기 1대, 바ჭ스, 삼, 칼쿠리 각 1개, 방화수, 방화사 각 1개	실정에 따라서 가감 할 수 있음
2. 전열기 및 오일난로 설치 개소	CO ₂ 소화기 1대, 난로용 방화사 1상자(봉지입)	
3. 마세크(연탄) 또는 목탄용 난로설치 개소	난로용 방화사 1상자(봉투입)	
4. 청내요소	대형 포말소화기 1대	

[별표 4]

화재발생시 보고 및 연락도



[별지 서식]

난방기구 설치허가 신청서

설치 위치 (사무실)			
설치 기구명		용량	
사용기간			
비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인)

청양군 재무과장 귀하

청양군공사의수의계약사유평점제실시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8년 12월 15일

청양군 훈령 제303호

청양군공사의수의계약사유평점제실시규정 폐지규정

청양군공사의수의계약사유평점제실시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8년 12월 15일

청양군 훈령 제304호

청양군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청양군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양군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을 “청양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1장의 제목 “총 칙”을 “총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맞춤형복지제도”를 “맞춤형 복지제도”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맞춤형복지제도는 청양군”을 “맞춤형 복지제도는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복지서비스에 대한”을 “복지서비스의”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항목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 범위

- 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항목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3.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5. “기본포인트”란 모든 공무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는 포인트를 말한다.
 6. “변동포인트”란 근속년수,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배분되는 포인트를 말한다.
 7. “운영자”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의장을 말한다.
 8. “공급자”란 복지항목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군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공무원(「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보호직원,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청양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군의회 의원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제1항 중 “맞춤형복지제도”를 “맞춤형 복지제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질병휴직)·동조 제2항제4호(육아휴직) 및 제5호(가사휴직)”를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제5호의 규정”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모든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상해·의료비보장보험으로 구성한

다”를 “생명 · 상해 · 의료비 보장보험으로 구성하며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복지점수가 소진된다”를 “변경할 수 없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를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복지점수”를 “복지포인트”로 한다. 제10조 제목 “(복지점수의 배정기준)”을 “(복지포인트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점수”를 “복지 포인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기본점수”를 “기본포인트”로, “700점”을 “800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근속점수”를 “근속포인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가족점수”를 “가족포인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적용한다.

제10조제4항 중 “근속점수”를 “근속포인트”로, “가족점수”를 “가족포인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복지점수는”을 “복지포인트는”으로, “변동복지점수는 연도”를 “연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신규채용 · 복직”을 “임용 · 복직”으로, “복지점수”를 “복지포인트”로, “월단위”를 “월 단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아니하거”를 “않거”로, “복지점수”를 “복지포인트”로, “월단위”를 “월 단위”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가족점수”를 “가족포인트”로, “복지

비”를 “맞춤형 복지비”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배정점수”를 “배정포인트”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맞춤형복지제도”를 “군수는 맞춤형 복지제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복리비”를 “복지비”로, “1회, 5일”을 “말일”로, “영수증원본을 붙인 신청서를 운영부서에”를 “영수증 원본을 운영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운영자는 맞춤형 복지관리시스템에 의하여 복지서비스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제11조제6항 중 “운영관리자”를 “운영자”로, “일괄 작성하여 지급 처리함으로써 회계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를 “작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복지점수”를 “복지포인트”로,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를 “맞춤형 복지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복지점수”를 “복지포인트”로, “아니하며 또한”을 “않으며”로 한다.

제12조 중 “복지점수”를 “복지포인트”로, “증빙자료”를 “증거 자료”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관련부서에 대하여 복지실태”를 “복지실태”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18년 12월 15일

청양군 훈령 제305호

청양군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정 주요 정책결정과 관련 청양군수의 자문을 위해 청양군 정책특별보좌관을 위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청양군 정책특별보좌관(이하“정책특별보좌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
2.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군민 및 이해관계자 등 의 군정참여의 촉진과 의견 수렴
3.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3조(위촉) 정책특별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주요정책 분야
2. 특정현안 분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4조(임기) 정책특별보좌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책특별보좌관이 사임,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수당 등) 정책특별보좌관의 자문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정책특별보좌관으로부터 자문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누설 금지 등) 정책특별보좌관은 자문 및 그 밖의 자문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대2지구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 고시

신대2지구 마을단위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에 의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청 양 군 수

1. 목적

- 해당 마을의 특성에 맞도록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주민 역량강화 및 소득 기반 확충을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생활터전의 유지 및 최소한의 기초생활 수준을 보장

2. 사업 현황

- 명 칭 : 신대2지구 마을단위종합개발사업
- 위 치 : 충남 청양군 운곡면 신대2리 일원
- 면 적 : 205.7ha
- 주요사업계획
 - 기초생활기반확충 :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공동 주차장 조성 등
 - 지역소득증대 : 할매의 참거리 학습관 조성 등
 - 지역경관개선 : 마을입구환경정비, 사자산 101가지 이야기 보따리길 조성
 - 지역역량강화 : 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운영비지원, 기타 부대비용 등
- 소요사업비 : 760백만원(지특532, 도비68, 군비160)
- 사업기간 : 2016년 ~ 2019년(4년간)
- 사업시행자 : 청양군수

3.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18. 12. 1. ~ 2018. 12. 14.(14일간)
- 열람서류 : 신대2지구 마을단위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서
- 장 소 : 청양군청 건설도시과 농촌개발팀 (☎041-940-2372)

청양군 고시 제2018 - 98호

남양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일반지구) 시행계획 고시

남양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일반지구)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의거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04일

청 양 군 수

1. 목 적

농촌지역의 거점공간인 중심지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의 불특정 다수 주민이 이용 가능한 적정수준의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중심지의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서비스 기능 향상을 도모.

2. 사업 현황

- 명 칭 : 남양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일반지구)
- 위 치 : 충남 청양군 청양면 남양면 구룡리 일원
- 면 적 : 중심지 면적 15.5km²
-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금빛남양활성화센터, 시니어복지회관 리모델링
 - 지역경관개선 : 안전나눔길 조성, 금빛로 조성, 행복쉼터
 - 지역역량강화 : 주민교육, 홍보 · 마케팅, 정보화구축, 마을경영
- 사업비 : 5,950백만원[국고 4,165, 도비 238, 군비 1,547]
- 사업시행기간 : 2017~2020(4년간)
- 사업시행자 : 청양군수
- 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

3.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청양군청 건설도시과(☎ 041-940-2372)에서 열람 가능.